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체코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 Czech Republic, 체코어: esk Republika)
면적	78,870 km ² (자료원 : 체코 통계청)
수도	프라하(Prague)
인구	10,699,142 명 (자료원 : 체코 통계청, 2020년 6월기준)
민족(인종)	체코인(64.3%), 모라비아인(5%), 슬레지안(0.1%), 슬로바키아(1.4%), 우크라이나(0.5%), 폴란드(0.4%), 러시아(0.2%), 독일(0.2%), 헝가리(0.1%), 기타(2.5%), 미확인(25.3%)
언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일어
종교	카톨릭(10.5%), 개신교(1.0%), 기타(8.6%), 무교(34.5%), 무응답(44.7%)
기후	4계절이 뚜렷한 편으로 내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 혼재, 연평균 기온 9~11도 (여름 최고 기온은 32~37도,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20도 정도)
국가원수	대통령: 밀로쉬 제만(Milos Zeman) (2013년 3월 취임, 2018년 3월 재임) 총리: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 (2017년 12월 취임 후 사임, 2018년 6월 총리로 재 지명)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0-03-22 (자료원 : 체코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협정	1990-10-26	항공협정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약	1995-03-03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투자보장협정	1995-03-16	투자보장협정 발효	
과학기술협정	1995-04-03	과학기술협정 발효	
원자력협력협정	2001-03-16	원자력협력 협정 서명	
사회보장협정	2008-11-01	사회보장협정 발효	
경제협력협정	2009-05-15	경제협력협정 발효	양국 정부는 산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환경보호,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연구소, 기업, 전문기구, 상공회의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
한-EU FTA	2011-07-01	한-EU FTA 발효	
취업관광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협정	2012-06-01	취업관광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협정 발효	
2014-2016 교육문화협력 시행계획서	2014-11-05	2014-2016 교육문화협력 시행계획서 발효	양국간 교육 관련 정보 교류, 고등교육기관 협력, 상대국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공 등 교육분야 협력 및 양국간 음악, 공연, 미술, 도서관, 박물관,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이중과세방지협약(개정)	2019-12-20	이중과세방지협약(개정) 발효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체코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로 함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2,463 명 (자료원 : 체코 내무부(영주권 및 비자소유자 기준, 2020년 10월말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한국과의 주요 인사교류 현황

- 1992. 4. 체코 Vaclav Havel 연방 대통령 내외 국민 방한
- 1994. 10. 체코 Vaclav Klaus 총리 내외 방한
- 1995. 3. 한국 김영삼 대통령 내외 국민 방체
- 2001. 3. 체코 Milos Zeman 총리 내외 방한
- 2003. 7. 한국 고건 국무총리 내외 방체
- 2009. 4. 한국 한승수 국무총리 방체
- 2009. 5. 체코 Vaclav Klaus 대통령 방한(EU 의장국 자격)
- 2011. 10. 체코 Milan Stech 상원의장 방한
- 2012. 3. 체코 Karel Schwarzenberg 외교장관 방한
- 2013. 5. 한국 박병석 국회부의장 방체
- 2014. 7.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체
- 2015. 2. 체코 Sobotka 총리 방한
- 2015. 12. 한국 박근혜 대통령 방체
- 2016. 8. 한국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방체
- 2016. 11. 체코 Lubomir Zaoralek 외교장관 방한
- 2017. 3. 한국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방체
- 2017. 6. 체코 하마ček 하원의장 방한
- 2017. 9. 제72차 유엔총회(뉴욕) 계기 한-체코 정상회담
- 2017. 10. 한국 국회 대표단(이철희, 황희, 추혜선 김성원 의원) 방체
- 2017. 10. 체코 슈테흐 상원의장 및 상원의장단 방한 (원전협력)
- 2017. 11. 한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체 (원전사업 협력)
- 2018. 2. 체코 슈테흐 상원의장 방한
- 2018. 7.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방체 (한-체 공공행정협력포럼)
- 2018. 11.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방체
- 2019. 5. 한국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방체 (한-체 경제공동위)
- 2019. 6. 한-V4 외교장관회의(브라티슬라바) 참석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 2019. 6. 한국 김건 국제안보대사 방체 (제3차 한-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

○ 2018년 7월 16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체코 공공행정포럼이 개최돼, 한국-체코 양국 정부부처가 양국의 정책 사례(전자정부, 주민등록, 사이버 수사, 국가통계 등)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심보균 차관), 인사혁신처, 경찰청, 조달청, 대구시 등이 참여하고 체코는 내무부, 지역개발부, 경찰청, 프라하시에서 참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27일 G20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로 중간 경유차 프라하를 방문해 28일 체코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을 논의했으며, 체코 동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6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V4 외교장관회의의 참석차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방문 계기, 토마쉬 페트리ček 체코 외교

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교역·투자,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으며, 특히 페트리ček 장관은 디지털화, AI, 나노기술 등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한국-체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2019년 6월 11일 외교부는 프라하에서 제3차 한국-체코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갖고 사이버 규범 마련 및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한국-체코 양국 간 협력 지속에 대해 논의했다.

-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맞아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양국의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온 것을 환영했으며, 제만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효율적 대응이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제만 대통령도 수교 30주년이 과학연구, 신기술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추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제

- 한국-체코 에너지, 인프라, R&D 분야 등 MOU 18건 체결: 2015년 12월 한국-체코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개최돼 양국의 에너지, 인프라, R&D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고, 보건의료, ICT, 문화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8건의 MOU를 체결했다. 또한, 한국전력과 체코의 스코다프라하(SP)는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원전분야 신기술 교류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체코 원전사업 MOU 체결 및 협력 교류 활발: 체코정부는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원전 1~2기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두코바니 원전은 2021년 중 잠재공급자 입찰안내서를 진행할 예정이며 203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는 한국의 한수원을 비롯한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미국 WEC, 중국 CGN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에 봉사단 파견, 아이스하키팀 후원, 트레비치 지방상공회의소와 원전사업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원전수주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양국 간 원전 협력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7년 10월 체코의 원전특사를 시작으로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원의장이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형 원전의 안정성과 건설역량을 확인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당시 총리 내정자)를 만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경제·산업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하블리ček 체코 산업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체코 전략산업계 연합과 원자력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제4차 한국-체코 경제공동위 개최: 2019년 5월 31일 외교부와 체코 산업부의 제4차 한국-체코 경제공동위가 프라하에서 개최됐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블라디미르 바르틀(Vladimir Bartl) 체코 산업부 차관, 정부대표 20명이 참석해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

- 2013년 4월 서울에 주한 체코문화원이 개설됐으며, 2013년 9월에는 체코 카렐대학교에 한국학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세종학당이 설립됐다. 2013년 12월에는 팔라츠키 대학과 강남대에서 한국어 강의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K-Pop 경연대회 및 문화행사 등이 개최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체코에서 한국 영화는 1992년 이래로 체코에서 꾸준히 해마다 상영되고 있으며, 매년 프라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영화제 FILMASIA에서는 최신 한국 인기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다.

-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체코 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또한, 김치 배틀 행사, 프라하 치맥 페스티벌, 한국-체코 차세대 음악회, 태권도 대회, 비빔밥 페스티벌, 한지공예 전시회 등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2019년 7월에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비보잉 댄스를 선보이는 'Show Passion Korea' 공연이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받으며 프라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10월에는 프라하 시내에서 한국 영화 & 음식 축제가 개최돼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2.45	4.35	2.85	2.57	-
명목GDP (십억\$)	195.09	215.91	245.23	246.95	-
1인당 GDP (PPP, \$)	33,477.92	35,508.97	37,339.72	38,833.77	-
1인당 명목 GDP (\$)	18,485.24	20,409.98	23,112.59	23,213.95	-
정부부채 (% of GDP)	36.81	34.66	32.56	31.62	-
물가상승률 (%)	0.67	2.45	2.16	2.56	-
실업률 (%)	3.95	2.89	2.24	2.2	-
수출액 (백만\$)	162,715.86	182,235.82	202,749.33	199,037.41	14,698.66
수입액 (백만\$)	143,040.96	163,374.14	185,098.96	177,582.03	13,563.2
무역수지 (백만\$)	19,674.9	18,861.68	17,650.37	21,455.38	1,135.46
외환 보유고 (백만\$)	85,380.34	147,598.06	142,164.66	149,476.74	149,391.43
이자율 (%)	0.05	0.5	1.75	2	0.25
환율 (자국통화)	24.44	23.38	21.73	22.93	25.01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20년 체코 경기는 탄탄한 내수 및 고용시장과 브렉시트 이행 지연, 미·중 무역분쟁 해소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줄어들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3월 유럽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다.

10월 체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년 2분기 GDP는 1조 3,287억 코루나로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대외경제 수요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외 수요 부문의 경우 '20년 2분기 수출은 8,418억 규모를 기록하였고, 특히 상품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1,986억 코루나 규모만큼 큰 폭 감소하였다. 설비투

자는 3,403억 코루나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418억 코루나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및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은 고정투자(-1.4%)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9월부터 시작된 2차 유행 및 록다운 재시행 등으로 3분기 경제는 감소세(3분기 GDP 1차 추정치 5.8%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생산(Production)은 '20년 3월부터 급감하여 4월 전년동기대비 -24.7%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회복하여 9월 전월대비 4.1% 증가(2019년 11월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특히 3,4월 섣다운 조치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11.4%·-26.7%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회복하여 9월 전월대비 4.7%를 기록하였다. 이는 2차 유행에도 별도 섣다운 조치를 하지 않고, 유연하게 잘 대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9월 2.8%로 록다운 1차 조치가 시행됐던 3월 2.1% 이후 6개월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동제한령 및 영업제한 조치 여파로 3월 이후 실업자 수(11.3 만 명)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9월 실업자 수는 14.7만 명을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5~74세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업 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 Index)는 10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으나, 9월 3.2%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상점 제한으로 레스토랑, 주류 등 물가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 환율(유로 대비 코루나)은 유로화 선호현상, 유로지역 대비 체코 경제 권역의 경제구조 취약성 등으로 3월 26.05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월 평균환율 27.213을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가장 심각했을 때인 4월(27.262), 5월(27.269)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고자 체코 중앙은행과 체코 정부는 금리 인하 및 경기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체코 중앙은행(CNB)은 첫 국가비상사태선포(3월 12일) 이후 기준금리(key repo rate)를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2.00%를 인하하여 11월 25일 기준 0.2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12년 11월 재정위기 수준(0.05%)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체코 정부는 경기부양책(1조 1,900억 코루나) 등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특히, 체코 정부는 3월 16일 시행한 대출프로그램 Covid-1을 시작으로 4월 21일 대출보증프로그램 Covid 2에 이어 5월 18일 최대 규모(1,500억 규모) 대출보증프로그램 Covid 3을 발표하였으며, EU 결속기금을 활용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 전망

'20년 5월 록다운 해제 이후 생산 및 영업재개, 정부의 임금보조 및 자영업 지원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체코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10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2차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서비스 산업 타격 심화 등으로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여부,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 글로벌 및 유로존 수요 회복 속도가 체코 경기회복의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관의 '20년, '21년 체코 경제성장률 전망은 아래와 같다.

- 체코 재무부('20년 9월 발표) : '20년 -6.6%, '21년 3.9%
- 체코 중앙은행('20년 11월 발표) : '20년 -7.2%, '21년 1.7%
- IMF ('20년 10월 발표) : '20년 -6.5%, '21년 5.1%
- EU집행위 ('20년 11월 발표) : '20년 -6.9%, '21년 3.1%

영업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1년 초반까지 내수 부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년간 체코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민간소비도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정으로 '20년에는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년과 '22년에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차질, 공장 조업 중단, 수주 지연 등으로 인한 기업 수익 타격으로 당분간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경제상황의 큰 영향을 받는 체코 수출은 유럽지역의 10월~11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로 유로존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0년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공급체인 및 생산이 유지되고 유로존 경기가 회복추세로 전환되면 '21년~'22년에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3월 이후 상승해오던 실업률도 2차 제한조치에 따른 기업 재정악화 및 노동수요 침체 심화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체코 실업률은 '20년 2.7%, '21년에는 3.4% 수준이 전망(EU 집행위)되고 있다.

식품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20년 3분기까지 3% 수준으로 유지됐던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감소에 따라 서비스 가격 상승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20년 4분기와 '21년 4분기에 각각 2.9%, 2.2%로 전망된다.

'20년 10월 이후 체코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체코 코루나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돼, 체코 코루나 화폐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중앙은행('20년 11월 전망치)은 '21년 유로당 코루나 평균 환율을 26.6으로 전망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2,492,419,079
2	슬로바키아	13,554,031,746
3	폴란드	9,349,783,726
4	영국	8,519,963,103
5	프랑스	8,392,963,815
6	이탈리아	6,869,266,817
7	오스트리아	6,863,982,408
8	헝가리	4,666,629,096
9	네덜란드	4,645,528,261
10	스페인	4,569,633,64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9,413,682,174
2	슬로바키아	13,920,840,988
3	폴란드	10,912,335,248
4	프랑스	9,284,496,883
5	영국	9,026,391,182
6	오스트리아	8,013,316,336
7	이탈리아	7,406,702,153
8	네덜란드	6,339,140,214
9	헝가리	5,438,716,941

10	스페인	5,215,928,381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5,641,693,394
2	슬로바키아	15,284,559,341
3	폴란드	12,235,364,967
4	프랑스	10,274,863,192
5	영국	9,398,882,546
6	오스트리아	9,022,427,928
7	이탈리아	7,812,021,809
8	네덜란드	7,469,495,415
9	스페인	6,369,132,726
10	헝가리	6,080,248,99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3,296,861,076
2	슬로바키아	15,103,249,567
3	폴란드	12,012,590,287
4	프랑스	10,253,975,495
5	영국	8,993,394,776
6	오스트리아	8,579,645,833
7	네덜란드	7,657,912,489
8	이탈리아	7,608,274,605
9	헝가리	6,492,430,623
10	스페인	6,443,661,95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7,779,178,409
2	중화인민공화국	17,648,830,336
3	폴란드	11,776,829,120
4	슬로바키아	7,252,604,569
5	이탈리아	6,164,700,991
6	프랑스	4,523,591,937
7	오스트리아	4,130,249,046
8	네덜란드	4,066,962,057
9	영국	3,809,269,324
10	대한민국	3,506,128,68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2,065,680,401
2	중화인민공화국	20,498,182,473
3	폴란드	12,559,436,221
4	슬로바키아	7,868,064,259
5	이탈리아	6,882,636,402
6	오스트리아	5,134,637,982
7	프랑스	5,117,421,552
8	러시아	4,953,432,149
9	네덜란드	4,424,945,046
10	영국	4,258,895,44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6,370,434,646
2	중화인민공화국	26,052,061,135
3	폴란드	14,135,083,662
4	슬로바키아	9,174,322,400

5	이탈리아	7,709,572,404
6	프랑스	6,019,410,170
7	러시아	5,849,601,232
8	오스트리아	5,412,667,309
9	네덜란드	5,131,321,814
10	미국	4,664,304,95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4,074,081,130
2	중화인민공화국	28,254,762,877
3	폴란드	13,557,576,791
4	슬로바키아	7,855,076,774
5	이탈리아	7,353,343,374
6	프랑스	5,588,260,572
7	러시아	5,345,360,498
8	네덜란드	5,260,523,420
9	오스트리아	4,991,596,910
10	미국	4,722,342,316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8,416,144,191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4,630,333,600
3	870829	기타	4,005,281,636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098,056,695

5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51,418,977
6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546,768,272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539,070,288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93,228,464
9	940190	부분품	2,060,529,796
10	870899	기타	1,886,477,41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8,590,725,288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5,038,381,787
3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670,052,862
4	870829	기타	4,396,684,720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784,675,794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617,548,967
7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3,320,270,890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804,227,852
9	940190	부분품	2,605,410,196
10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378,733,78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것	8,240,484,905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450,884,473
3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70,881,336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이하인 것	5,015,478,910
5	870829	기타	4,954,714,211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4,587,103,971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4,369,516,783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45,071,098
9	870899	기타	2,656,861,354
10	940190	부분품	2,593,320,04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것	7,141,982,060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710,560,246
3	870829	기타	5,058,582,825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이하인 것	5,052,562,092
5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18,233,388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4,761,750,377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4,634,420,511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660,532,538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419,938,352
10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441,409,589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797,419,484
2	300490	기타	2,693,366,184
3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447,766,441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203,398,136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182,252,601
6	870829	기타	2,137,208,451
7	271121	천연가스	1,705,940,389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86,420,844
9	940190	부분품	1,606,633,512
10	847170	기억장치	1,586,003,64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247,432,67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178,126,289
3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119,073,607
4	300490	기타	2,990,282,294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623,758,292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535,617,922
7	870829	기타	2,393,976,918
8	271121	천연가스	1,996,579,962
9	940190	부분품	1,935,430,099
10	847170	기억장치	1,844,198,66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109,312,877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967,918,654
3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496,116,379
4	300490	기타	3,345,757,207
5	870829	기타	2,695,867,579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602,429,912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552,350,749
8	847170	기억장치	2,505,556,908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2,263,037,265
10	271121	천연가스	2,254,026,21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094,831,562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740,778,344
3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725,909,650

4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84,011,094
5	300490	기타	3,551,998,229
6	870829	기타	2,619,685,168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442,896,498
8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273,015,311
9	847170	기억장치	2,048,257,036
10	870899	기타	1,995,590,634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2,176	619	1,557
2017	2,212	716	1,496
2018	2,452	864	1,588
2019	2,114	852	1,262
2020	2,182	776	1,40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748	128	620
2	8138	전산기록매체	70	0	69
3	8422	전동기	14	12	1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66	1	65
5	7111	원동기	120	9	111
6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13	4	109
7	7901	기타기계류	42	4	37
8	812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8	0	7
9	8269	기타조명기기	24	16	8
10	2140	합성수지	70	1	69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20	자동차부품	669	116	553
2	8138	전산기록매체	186	0	186
3	8422	전동기	106	14	92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99	1	98
5	7111	원동기	85	5	80
6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73	3	70
7	7901	기타기계류	69	3	66
8	812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68	2	66
9	8269	기타조명기기	54	11	43
10	2140	합성수지	46	2	4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748	128	620
2	8148	전자현미경	1	86	-85
3	7112	펌프	27	68	-42
4	8155	분석시험기	1	61	-60
5	3203	타이어	36	26	10
6	7512	밸브	9	40	-31
7	7290	기타산업기계	22	6	16
8	2150	합성고무	3	12	-10
9	8151	계측기	23	17	6
10	8422	전동기	14	12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669	116	553
2	8148	전자현미경	0	80	-80
3	7112	펌프	21	71	-50
4	8155	분석시험기	2	54	-52

5	3203	타이어	18	39	-21
6	7512	밸브	7	26	-19
7	7290	기타산업기계	10	21	-11
8	2150	합성고무	0	17	-17
9	8151	계측기	35	14	21
10	8422	전동기	106	14	9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 3. 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 4. 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0. 9.)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 (2013. 8. 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2013.10. 1.) 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 8. 1.), 페루 (2013. 3. 1.), 에콰도르 (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2018. 2. 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 보류. 직전협상: 2016.10.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 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 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2020. 6.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 보류. 직전협상: 2013.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 4. 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 2000.10. 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20. 9.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협상: 2020. 9.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직전협상 2020. 7.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9. 4.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 부분 현대화 추진 중, 직전 협상: 2019. 7.	기존 협정 발효일 : 2005. 3. 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 1998. 3. 1.
FTA(Free Trade Agreement)	영국	협상중, 직전협상 2020. 6. 1.	2020.12.31. 협상완료를 목표로 두고 추진 중

<자료원 : EU 집행위>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규 금지품목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코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에 대한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을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행분쟁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류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8=체코,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등)

○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이번 발표된 제도가 법제화 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의 예의주기가 특히 요구된다.

○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19년 12월 19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집행위가 조세 부과방식 및 WTO 규정 합치성 여부 등 관련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7월~10월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행위는 평가결과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EU-27 회원국 모두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에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포된 후로 지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 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 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 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어 왔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왔으나 과학위원회는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의 경우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라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

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0년 1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 부가가치세(VAT) 관련 신규 내용

2021년 7월 1일부로 역외국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이 변화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22 유로 미만의 소규모 제품에 대해 VAT를 면제해왔으나, 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에 대한 인보이스를 22 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해 VAT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국 전자상거래 판매 중 25%에 달하는 거래가 VAT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내생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VAT로 많은 EU 기업이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제품 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EU는 2021년 1월 1일부로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 상황을 고려해 발효시점을 6개월 연장한 7월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

2020년 10월 28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공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체코의 통관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다.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가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EU의 관세 분류 번호는 EU 집행위원회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

1) 약식 통관

택송물의 원활한 배송과 행정절차 비용 감소를 위해 관련 통관 당국에 약식 통관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약식 통관절차의 가장 신속한 형태는 지역 통관 절차이며, 이 방식은 수입할 때 상품이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통관절차 없이 직접 배송될 수 있게 하고, 수입업자가 지정된 파일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약식 통관의 경우, 단일 관리 문서(SAD)의 통관당국 제출만이 요구된다. 세관당국의 감사를 허락한다는 조건에서 통관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약식통관 허가를 낼 수 있다.

2) 정식 통관

체코의 통관 절차는 체코 우편 당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지역 외 국가에서 배송된 물품이 우편당국으로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관 담당 부서로 보내지게 된다. 세관 조사는 통관 서류 검사, 물품 확인, 수입자 조회 등이며, 물품 확인은 X-ray 검사와 필요한 경우 택송물 개봉 및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입자는 수입 통관 절차를 직접, 또는 우편 당국 지정 관세사를 통해 진행, JSD(Jednotny spravni doklad - The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완료한다. 수입품에 대한 CE 및 DoC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택송물이 세관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체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다.

3) 우편통관

우편통관의 경우, 22유로 아래 비상업적 목적의 택송물만이 부가가치세 (VAT - 체코어 DPH) 와 관세 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EU외 국가에서 택송물을 받을 경우 22유로 이상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 150유로 초과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세에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5% 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는 택송물 수신인에게 있다. 상품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생긴 경우, 수신인은 우편 당국으로부터 세관 처리에 관해 통지받으며, 필요 제출 서류(물품 가치 증명서 (예: 인보이스), 물품 목적 및 사용처 문서, 우체국에 세관 처리 위임 시 위임장 등)를 제출하고 택송물이 배송될 때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 소요 기간에 발생하는 보관료 및 통관비가 추가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체코 세관은 유럽 내에서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KOTRA 프라하 무역관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원산지 증명서를 원본으로 요구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바이어 및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체코 수출 시 필요한 서류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담당 세관원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통관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보수적으로 준비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해야 한다.

또한 최근 단순 브로슈어, 카탈로그, 책자 등도 통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22유로 이상인 경우 수신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

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purpose)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1유로 이상 22유로 이하의 금액으로 적어 송부하는 것이 좋다.

단, 2021년 7월부터 22유로 이하 금액과 상관없이 VAT를 부과하고, 엄격하게 강화될 것이므로 7.1일 이후부터는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UI Logistic Czech s.r.o.

주소	Beskydska 1488, 738 01 Frydek-Mistek
전화번호	+420 558 436 623
이메일	twkim@uilogistic.com
비고	홈페이지 없음

○ ESA Logistic

주소	Oldrichova 158 272 03 Kladno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314 006 444
이메일	info@esa-logistics.eu
홈페이지	https://esa-logistics.cz

○ Care &Go s.r.o.

주소	Velenka 89, 289 12 Sadska,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325 598 150
이메일	info@careandgo.com
홈페이지	http://www.careandgo.com

○ CSKD INTRANS a.s.

주소	Jana Zelivskeho 2, 130 00 Praha 3,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220 193 200
홈페이지	http://www.railcargoooperator.cz

○ Pactra International (Czech) s.r.o.

주소	C.P. 408, 739 53 Hnojnk, Czech Republic
----	-----------------------------------------

전화번호	+ 420 558 919 001
이메일	info@plakor.cz
홈페이지	http://www.plakor.cz

◦ CHB Logistic s.r.o.

주소	Thunovsk 179/12, Mal Strana 118 00 Praha 1
전화번호	+420 596 710 390
이메일	info@chb-prague.com
홈페이지	http://www.chb-prague.com/en/

<자료원 : KOTRA 프라하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투자

체코는 대부분 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의 별도 승인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 금액 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 법 인설립의 경우 상법에 의해 체코 기업과 동일하게 회사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규

기본적으로 회사법(Act 90/2012 Coll.)에 따라 법인설립이 규정되며, 민법(Act No. 89/2012)에는 기업, 파트너십 및 협동조합의 구성 및 구조에 관한 기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 관련 조건 및 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법규(Act No. 72/2000 Sb.)에서 규정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체코는 자유화 이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온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달리, 자유화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에 국내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다른 특혜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주변국의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아 1998년 4월에야 처음으로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코 내 인력부족이 대두되고 기존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2019년 9월 6일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 개정(Act No. 210/2019 Sb.)했다. 기존에는 인센티브 신청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관계부처 승인을 거쳐 최종으로 인센티브가 결정됐으나, 개정된 투자인센티브의 경우 체코정부에서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투자 인센티브를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제조업 투자의 경우 80% 이상의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 월급 이상 지급,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R&D 투자 등 고부가가치 조건이 추가됐지만, 고용보조 및 직원교육비 현금 지원의 인센티브는 취소돼 혜택은 축소됐다. 테크놀로지 센터(R&D 투자의 경우)와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경우 고용보조금 및 직원교육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지원요건이 대기업의 지원요건의 절반으로 축소됐다.

1)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적격비용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한 프라하를 제외한 모든 지역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투자의 경우 체코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신청 이전의 신규고용은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됨.)

2) 투자인센티브 한도(정부보조금 한도)

- 투자 인센티브는 정보보조금의 하나로, 정부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최대 인센티브 지원금이 제한된다. 2014년 7월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EU지침이 변경으로 체코 정부지원금의 상한선이 하향 조정됐다. 체코는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의 평균소득이 EU 평균소득의 60~75% 미만으로 분류돼, 기존 적격비용의 40%에서 축소된 25%까지만 투자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추가 지원이 없으나, 중기업의 경우 10%가 추가되고 소기업의 경우 20%가 추가된다. 따라서 적격비용에 대해 대기업 최대 25%, 중기업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까지 지원된다. (단, 데이터센터 투자의 경우 6.25%까지만 지원)

○ 기업분류 기준은 직원 수, 매출(Turnover), 자산(Balance sheet total)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규모 산출 시 관계사와 해외지사 등 그룹 전체 규모를 고려한다. (인센티브 신청 시 회사관계도 제출)

- 대기업: 직원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이 4,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중기업: 직원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이 4,3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 소기업: 직원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이 1,000만 유로 이하 기업

○ 적격비용(Eligible cost)은 인센티브 한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장기자산 투자 금액 또는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적격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자산 투자는 토지, 건물, 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하며 신규 기계구매에 최소 50%가 투자돼야 한다.

3) 투자 인센티브 지원 요건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 고부가가치 조건(제조업 투자), 최소 신규고용창출 인원 조건을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 격이 주어진다. 투자유형은 일반투자과 전략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는 최소 투자금액이 2억~5억 코루나에 달하고 최소 70~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하며, 일반투자 인센티브에 설비 투자 보조금을 추가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 제조업

- 최소 투자금액: 대기업 일반투자의 경우 1억 코루나(3년 내 투자)로 최소 50%는 신규 기계 구입에 투자해야 한다. 단, 낙후지역(afflicted region)과 산업특구지역(Special industrial zone)의 경우 투자금액은 절반인 5,000만 코루나로 축소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대기업 기준의 절반으로 해당 지역별로 2,500~5,000만 코루나로 축소된다.

- 고부가가치 조건: 최소 80% 이상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아래의 선택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단, 낙후지역(afflicted region)의 경우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선택조건: ①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 기관과의 협력

② R&D 직원비율 2%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에 10% 투자

-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5억 코루나(신규 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500명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테크놀로지 센터(R&D 센터)

- 최소 투자금액: 대기업 일반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1,000만 코루나(3년 이내 투자)로 최소 50%는 신규기계 구입에 투자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은 대기업의 절반인 500만 코루나이다.

-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대기업은 최소 20명, 중소기업은 최소 10명이다.

- 전략적 투자: 최소 투자금액 2억 코루나(신규 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70명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이 인센티브의 조건이며 분야별로 최소 신규 고용인원은 소프트웨어·IT 개발/데이터센터 20명, 첨단수리센터 50명, 공동서비스 센터 70명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분야별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 전략적 투자: 첨단수리센터(High-tech repair center)만 전략적 투자가 해당하며, 최소 투자금액 2억 코루나(신규기계 투자 최소 50%), 신규 일자리 창출 최소 100명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4) 투자 인센티브 내용

투자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유형에 따라 법인세 면제, 고용 보조금, 직원 교육비, 설비투자 보조금(전략적 투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감면

- 제조업, 테크놀로지 센터(R&D), 비즈니스 센터 모두 해당한다.
- 신규투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 기존 진출/체코 회사의 확장 투자인 경우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부분적 면제가 가능하다.

○ 고용창출 보조금 (Cash Grant)

- 테크놀로지 센터(R&D)의 경우 전지역(프라하 제외)에 신규고용 1인당 20만 코루나가 지원된다.
- 제조업의 경우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다.

○ 직원 교육비 (Cash Grant)

- 테크놀로지 센터(R&D)의 경우 전지역(프라하 제외)에 총 발생한 직원 교육비용의 50%가 지원된다.
- 제조업의 경우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다.

○ 설비 투자 보조금(Cash Grant)

- 전략적투자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승인에 의해 설비 투자 보조금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 제조업의 전략적 투자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10%(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지원, 테크놀로지 센터(R&D)와 첨단 수리센터(High-tech repair center)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20%(최대 5억 코루나 한도)까지 지원된다.

5) 최종 정부 심사 후 선별적 승인

투자 인센티브 개정으로 정부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후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 기존에는 신청서를 받은 체코투자청에서 심사 후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전략적 투자(대규모 투자)만이 정부의 심사를 거쳤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총리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보다는 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로 투자지역과 체코 정부에 창출되는 이점(사회보장세 및 VAT 등 정부예산 기여, 노동시장 기여, 인프라개발, R&D센터 및 연구기관 협력, 지역협력, 체코 현지공급업체와의 협력 등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신청 기업이 직접 산출해 작성해야 한다. 체코투자청에 따르면 체코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심사에서 투자창출 이점에 관한 제안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한 및 금지(업종)

군수품 또는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미디어의 경우 공중파 방송은 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은 등록 절차만 하게 돼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체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에는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설 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5억 코루나이며, 체코 내 법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체코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체코 기업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하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정부의 별도 승인 및 제

한이 없으므로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부 산업특구단지(Special Industrial Zone)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적용에서 혜택이 있다.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산업특구단지(SIZ)는 현재 Ostrava-Mosnov, Most-Joseph, Holesov 3곳으로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적용 시 최소 투자금액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다.

체코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산업 공단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됐다. 그러나 체코 내 산업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 및 민간 개발 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입주 대상 특정 산업 분야를 결정하지 않은 일반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다. 산업단지는 일반 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 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돼 있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 대상 단지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코 투자청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임대 및 매물 부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투자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투자지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중개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

◦ Strategic Industrial Zone Kolin-Ovcary

규모	29.4ha
위치	Prumyslova zona Kolin-Ovcary, 280 02
임차료	◦ 부지 매매가격: 1㎡ 당 410체코 코루나 (약 15.3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Planning - Ing. Martin Tichy (Head of the department) - 주소: Karlovo namesti 78, 280 12 Kolin (Mesto Kolin) - 전화: +420-777-297-479 - 홈페이지: www.zonakolin-ovcary.cz/en - 이메일: martin.tichy@mukolin.cz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4km, D11 고속도로까지 9km, 프라하 공항에서 74km ◦ 지자체인 Kolin시가 조성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TPCA(Toyota Peugeot Citroen Automobile Czech, s.r.o.), CCM Machinery, TOYOTA TSUSHO EUROPE SA 등이 있다.

◦ Strategic Industrial Zone Zatec Triangle

규모	364ha
위치	Prumyslova zona Triangle, Prumyslova 1062, 438 01 Bitozeves
임차료	◦ 부지 매매가격: 1㎡당 14.5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t Region - Ms. Alena Karfkov (The Project Manager of the SPZ Triangle) - 주소: Velka Hradebni 3118/48, 400 02 Usti nad Labem - 전화: +420-778-421-488 - 이메일: karfikova.a@industrialzonetriangle.com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triangle.com/en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8km, D8 고속도로 50km, R7도로 인접, 프라하공항에서 60km ○ 지자체인 Zatec시가 조성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넥센타이어, 키스와이어, Hitachi 등이 있다.
-----------	----------------------------------------------------------------------------------------------------------------------------------------------------------------------------------------

○ Strategic Industrial Zone Mosnov

규모	200ha
위치	Prumyslova zona Mosnov, Mosnov 410, 742 51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artment of Strategic Development, City of Ostrava - 주소: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 전화: +420-599-443-382 - 팩스: +420-599-442-040 - 홈페이지: https://www.ostrava.cz/en/podnikatel-investor/investment-opportunities/industrial-zones/strategic-industrial-zone-mosnov - 이메일: vpalicka@ostrava.cz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철도와 직접 연결, D1 고속도로 10km, R48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접, 오스트라바 공항에서 0.5Km ○ 지자체인 Ostrava시가 소유하고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지역이다. 입지한 대표기업으로는 Behr Group, Cromodora Wheels, Plakor, 현대모비스 등이 있다.

○ Strategic Industrial Zone Holesov

규모	360ha
위치	Holesovska 1691, 769 01 Holesov
임차료	○ 부지 매매가격: 1㎡당 450체코 코루나 (약 16.8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y Servis ZK, a.s - Ing. Jitka Vesela (Project Manager) - 주소: Holesovsk 1691, 769 01 Holesov - 전화: +420-703-481-923 - 이메일: jitka.vesela@industryzk.cz - 홈페이지: https://www.zonaholesov.cz/en/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3개의 메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고 산업구역 내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다. ○ 즐린(Zlin)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Industry Servis ZK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이다. 입지기업으로는 E.ON Distribuce, Pokart spol 등이 있다.

○ Strategic Industrial Zone Most-Joseph

규모	196ha
위치	Havran 139, Havran
임차료	○ 부지 매매가격: 1㎡당 340체코 코루나 (약 12.7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utory city of Most (Department of development and grants) - Mr. Tomas Fiala (Specialist of development and industrial zones) - 주소: 434 69 Most, Radnicn Street 1 - 전화: +420-476-448-560 - 이메일: Tomas.Fiala@mesto-most.cz - 홈페이지: http://www.pz-joseph.eu/en/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I/27 (Most - Zatec - Plzen) 국도 인접, R7 고속화도로 4km, E442 국제고속도로 8km (프라하에서 80km, 독일국경에서 30km에 위치) ○ Most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특구이다. 입지기업으로는 Yankee Candle, AFSI Europe 등이 있다.

〈자료원 : 체코 투자청,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프라하(Prague)

- 면적: 496km²
- 인구: 1,326,988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2%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42,435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프라하는 체코 내 최대 FDI 유입 지역으로 주로 글로벌 기업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 비즈니스 센터 등이 진출한다. 체코 내 지역 중 최대 대학 졸업자 수를 기록해 유능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나 그만큼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다수의 기업이 진출해 이직률도 높고 실업률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다. 또한, 다국적인 생활환경을 갖추고 거주민의 가처분 소득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 모라비아-실레지아(Moravia-Silesia)

- 면적: 5,430km²
- 인구: 1,197,018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3.9%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0,793 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지역으로 고속도로나 철도 항공 등의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과 그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한국 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 우스티(Usti)

- 면적: 5,339km²
- 인구: 819,453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3.6%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1,922 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프라하에서 약 80km에 위치하고 독일과도 가까워 프라하와 독일을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다. 최근 넥센타이어와 키스와이어(Kiswire)가 진출했으며, 향후 서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 중앙 보헤미아(Central Bohemia)

- 면적: 10,928km²
- 인구: 1,391,993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1.4%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6,134 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프라하와 인접한 중심부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다. 조밀한 도로 및 고속도로, 철도 네트워크, 숙련 노동력, 다각화된 경제 등이 장점이다.

○ 리베레츠(Liberec)

- 면적: 3,163km²
- 인구: 443,209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3%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0,819 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 근접한 전략적인 위치로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산업이 발달했다. 또한, 나노소재 및 첨단 기술 혁신 연구소를 보유한 리베레츠 기술 대학교가 위치한다.

○ 남부 모라비아(South Moravia)

- 면적: 7,188km²
- 인구: 1,193,752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1%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3,049 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체코 제2의 도시인 브르노가 위치한 남부 모라비아 지역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와 가까운 입지조건을 갖추었고 전통적으로 산업기반이 조성돼 있다. 국제공항을 포함한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브르노의 경우 다수의 대학이 밀집해 있어 우수인력 공급이 용이한 편이다.

○ 플젠(Plzen)

- 면적: 7,649km²
- 인구: 590,916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1.8%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2,681 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전통적으로 기계산업 기반이 있고 독일과 가까워 매력적인 투자지역 중 하나이다.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높으며 D5 고속도로를 통해 독일과 프라하와의 교통연결이 편리하다.

○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 면적: 4,759km²
- 인구: 551,493명 (2020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9% (2020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2,521 체코 코루나 (2020년 2분기 기준)
- 특징: 자동차, 전기 장비 및 섬유 제조, 농업 및 서비스 산업 등이 발달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465.1	9,814.77	9,521.68	11,010.36	7,576.54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2,487.44	2,181.81	7,560.01	8,662.55	4,917.9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35	10	256,115	43	244,687
2019	21	6	70,216	31	65,339
2020	9	2	8,563	12	6,99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9	3	186,315	18	183,316
도매 및 소매업	4	1	43,745	10	40,052
운수 및 창고업	1	0	599	1	599
숙박 및 음식점업	2	1	7	2	7
정보통신업	5	3	1,979	4	1,048
부동산업	2	1	17,690	2	17,69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1	5,780	6	1,97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9	3	52,526	13	52,59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5	1	12,756	10	11,280
운수 및 창고업	1	1	874	1	894
정보통신업	2	0	15	2	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0	3,945	4	452
교육 서비스업	1	1	100	1	1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	1	6,894	6	6,861
도매 및 소매업	2	1	532	5	129
정보통신업	1	0	8	1	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1,129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성우하이텍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차체 부품
모기업명	성우하이텍

○ 프라코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제

모기업명	(주)프라코
------	--------

○ 동원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도어 프레임
모기업명	동원금속(주)

○ 세종 체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배기시스템
모기업명	세종공업(주)

○ 현대자동차 체코 생산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동희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Chassis, 연료탱크, 브레이크/클러치 페달
모기업명	(주)동희산업

○ 현대트랜시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9
------	------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시트
모기업명	현대트랜시스 주식회사

○ 한화솔루션/첨단소재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경량-복합 플라스틱(EPP) 원재료 생산 및 경량복합플라스틱 원재료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 생산
모기업명	한화솔루션

○ 넥센타이어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PCR 타이어, LTR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주)

○ 삼성전자 체코/슬로바키아 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 제품 판매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가전 제품 판매

모기업명	LG전자(주)
------	---------

○ 대창시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시트 프레임
모기업명	(주)디에스시

○ GS칼텍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복합PP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제조용)
모기업명	GS칼텍스

○ 두산스코다파워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발전소용 터빈

○ 대한항공 프라하지점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대한항공

○ 현대제철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취급분야	완성차량 자동차용 철강강판 공급, 자동차용 강판 가공(폭재단, 사각재, 용접강판)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 현대글로벌비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운수 및 창고업
취급분야	물류, 창고, 운송
모기업명	현대글로벌비스(주)

○ 엔브이에이치 체코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인테리어 파트
모기업명	엔브이에이치코리아

○ 코스와이어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취급분야	스탠리스 와이어
모기업명	코스와이어

○ 현대엔지니어링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플랜트, 주택, 인프라, 설계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두산인프라코어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조업)
취급분야	건설기계장비
모기업명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 기아자동차 체코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판매업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현대자동차 체코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완성차 및 관련부품 판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한국수력원자력 유럽지사 프라하 사무소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연락 사무소
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급분야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모기업명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타이어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차량용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SK네트웍스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재 수입, 판매
모기업명	SK네트웍스

○ 동아이엔지 체코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
취급분야	금형(사출 금형, 프레스 금형) 제조 및 수리
모기업명	동아이엔지 주식회사

○ 팩트라 인터내셔널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운수 및 창고업
취급분야	포워딩, 창고, 운송, 서열, 조립
모기업명	팩트라 인터내셔널

○ 다스 체코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시트 부품
모기업명	다스

○ 에스피씨 지맥스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용 흡습재, 단열재, 테이프 등
모기업명	지맥스

○ 와이에스테크윈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급분야	공장 자동화 전기파트 설치 및 시운전
모기업명	와이에스테크윈

○ 제일기획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리테일, 마케팅
모기업명	제일기획

○ 삼성 체코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안전벨트
모기업명	삼성

○ 보백 유럽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SUB-MATERIALS
모기업명	보백CNS

<자료원 :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개요

회사법상 구분에 따른 형태로 외국기업도 체코 내에서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체코에서 회사의 형태 및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1조는 법인의 형태인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a.s.), 협동조합(Cooperatives) 및 유럽연합 내 특수한 형태의 법인인 European Company(SE),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EEIG) 및 European Cooperative Society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체코의 경우 대부분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그 설립절차 및 요건이 간편할 뿐 아니라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하나 혹은 다수의 자연인(Natural person) 또는 법인(Legal person)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20만 코루나에서 1코루나로 변경됐으며 준비금 또한 제한이 없어졌다. 법인 설립 시 체코 내 이미 동일한 회사명이 있는지 유의해야 하며, 회사 설립 과정은 회사 종류에 따라 약간 상이하나 기본적인 절차는 같다. 참고로 개인이 설립하지 않고 회사가 설립할 경우에는 주주가 될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도 추가로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법인형태로는 주식회사로 보통 대기업 설립 시 사용된다. 주식회사 형태는 유로 계좌를 보존시키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 등록 자본으로 200만 코루나(약 80,000유로)가 필요하다. 그 외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대부분은 독일어권 국가 투자자들에 의해 세금 관련 이유로 설립된다.

2)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절차

체코 내 법인 설립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서류 준비이다.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적합한 절차를 거쳐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 작성 및 문서 배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서류는 기본적으로 체코에서 법인 등기를 위해 체코어로 준비되어야 한다. 해당 서류들은 한국에서 준비한 국문·영문 서류를 바탕으로 체코에서 번역, 작성하게 되며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법인 등기 서류로 제출된다.

- 서류준비 및 공증: 체코에서 독립법인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위임장,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 대표자의 무범죄 증명서이며, 자연인의 경우 무범죄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준비한 문서가 체코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각 서류의 원본(국문)과 영문본을 준비해 공증받은 후,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를 찾아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를 거친 문서는 체코에서 체코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제반서류로 제출하게 된다.

- 법인 주소지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신청 전에 법인 주소지가 결정되어야 하며, 주소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 신청 전에 토지 및 건물의 구입 또는 임대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5월 이후 외국인은 특별한 제약 없이 체코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체코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반드시 영문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해 당사자 간 서명을 받는다.

- 정관 작성 및 샘플 서명(법인 설립): 정관은 반드시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체코 내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한 국문 또는 영문 정관을 바탕으로 체코어 정관을 만들 수 있으나, 국문 또는 영문 정관은 문서 상의 효력이 없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법인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3) 자본금의 규모, (4) 지분 복수 보유 여부, (5) 이사회 명단, 주소 및 회사대표방법 등이 있다. 정관 초안을 완성하고 주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선임된 변호사가 위임된 권한에 따라 정관에 주주를 대신해 서명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정관에 서명이 된 순간부터 회사는 법률적으로 '설립 중인 회사'의 지위를 획득하며, 이때부터 제한적이기

는 하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샘플 서명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회사 대표가 변호사가 보는 가운데 서명을 하고 동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으로, 법인 등기 신청 시 샘플 서명을 제출하게 된다.

○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설립자는 법인설립 목적만을 위해 개설된 특별 은행계좌에 출자금을 불입해야 한다. 체코 내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은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 법인 등기 전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 즉시 개설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은 1체코 코루나이나, 실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입금 시에는 은행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00코루나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00만 체코 코루나이며, 일반 은행에서 회사 설립 용도의 특별 계좌를 개설해 자본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특별 계좌는 영업허가서에 발급된 법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 영업허가서(Trade License, Zivnostensky List) 발급: 체코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활동에 맞는 영업허가서가 필요하다. 영업허가서는 각 시청 및 지방행정부 소속 영업 허가소(Trade Office; Zivnostensky Urad)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영업허가소는 신청서를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통상 1~2일이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1,000체코 코루나에 각 활동영역별로 500코루나가 추가된다. 영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의 신청서(온라인 <http://www.rzp.cz/elpod.html>), 정관, 사업장 임대계약서(또는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영업활동 영역, 공인대표자의 무범죄 증명서(체코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등이며, 사업 종류에 따라 공인대표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등, 공인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영업허가서 신청에는 사업종목에 따라 일반 신청, 허가 등으로 분류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활동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증 또는 사업책임자의 고용 계약서와 전문자격증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 상업 등기소 등록(Commercial Register): 법인은 각각의 등기법원(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상업 등기소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회사의 집행기구는, 설립서류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창립 6개월 이내에 상업 등기소에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 등기소 의무 표준 신청 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등기법원은 부당한 지체 없이 회사를 등록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업 등기소에 등록 후에는 상업 등기소 홈페이지(www.justice.cz)에서 등록된 법인을 검색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등록할 각 정보를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설립의 타당성, 설립자의 존재 여부(본국의 법인등기증 등), 설립자를 위해 활동할 대표의 권한 등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발행한 지 3개월 이내)

- 설립 서류(설립자 증서, 회사설립계약서, 정관 등)

- 법인의 법정최소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증거 (일반적으로 관련 은행 입금증서)

- 집행기구 및 감사기구 구성원이 서명한 진술서, 구성원의 세부사항을 상업 등기소에 등록에 대한 각 구성원의 동의서

- 각 대표자 및 감사회 구성원에 대한 무범죄 증명서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발행한 지 3개월 이내)

- 사업활동과 관련된 영업허가서(Trade License)

- 사업장 임대계약서(공중 및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

- 상기 서류나 신청서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현지 변호사 등)에 대한 위임장

○ 납세번호(DIC) 발급 신청: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번호(DIC,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세 등록마감은 회사설립이 완료 후 15일 이내이며 국세청(Tax Office)에 등록 후 회사는 납세번호(DIC;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No. 235/2004)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Turnover)가 1백만 체코 코루나를 초과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등록기간은 부가가치세 납세자 의무가 발생한 날(연간 매출액이 1백만 초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등록기간 없이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 납부 등록: 인력 고용을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세(고용주분) 납부를 위해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종업원 고용 후 8일 이내에 지역별 사회보장사무소에 등록하고 또한 8일 이내에 의무 의료보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보험사에 의료보험을 등록해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실제 소유자 등록: 기업이 범죄나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경우 기업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EU AML(Anti-Money Laundering) 유력지침을 기반해 2018년 1월부터 기업의 실제 소유자 정보등록 제도가 발효됐다. 모든 회사는 2019년 1월까지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18년에 실질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 소유주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등기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포함되어 할 정보는 실소유주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Rodné slo). 국적, 기업과 실소유주의 관계 증빙 등이다. 실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돈세탁 방지 관련하여 고객의 신원조회가 요청된 경우에만 특정기관과 개인에게 공유된다. 부동산 업체나 금융기관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법적 실체(기업)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야 하므로 소유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 및 금융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 데이터 메일박스(Datova Schranka): 데이터 메일박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 법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 및 수신하기 위해 각자의 데이터 메일박스를 보유하게 된다. 데이터 메일박스는 상업 등기소 등록 후 각 법인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며,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주소로 고유 로그인 정보가 발송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인은 데이터 메일박스를 통해 세금 등록 및 세금신고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 메일박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보낸 후 10일 이 지나면 공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오랫동안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데이터 메일박스를 정기적으로 로그인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사

외국기업의 지사(Branch Office)는 체코법인(Czech legal entity)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며, 해당 외국회사를 대신해 의무가 발생한다. 본사(외국기업)를 대신해 회사 설립, 합작 투자, 기존 기업인수 및 판매, 부동산 취득 등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의 내부활동에도 적용된다. 지점의 경우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모회사의 결정으로 쉽게 해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프로젝트성 일을 하기 위해선 해산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인보다 적합한 진출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점의 지점장은 모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지점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지사 설립: 지사설립은 법인 등록 절차와 유사하며,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영업허가서 발급 후 지점 등록신청서에 지점의 향후 활동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상업등기소 등록 후 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설립자의 설립각서나 자본금 예치가 필요 없다. 지점명은 모회사명 뒤에 지점이라는 의미의 'odstepny zavod'가 붙는다

연락사무소

체코에서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회사형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사를 설립해 연락사무소로 운영 가능하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체코의 주식회사(a.s.: Akciová Společnost / Joint Stock Company)는 등록자본금이 특정 액면가의 주식으로 분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설립된다.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주주(법인 또는 개인)가 작성한 정관으로 설립되며,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명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Akciová společnost" 혹은 주식회사의 약자인 "Akc. Spol.", "a.s."를 포함한다.

○ 주식발행

주식회사는 주식증서 또는 장부상 주식의 형태로 무기명 또는 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무기명 주식증서는 금지됐고 기존의 무기명 주식증서는 은행에 동결(예치)하거나 장부상 주식으로 교환해야 한다.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제한이 없으나 기명주식

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양도 승인 요구 등으로 제한받을 수 있으나 정관에는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기명주식 증서는 구두, 서면, 계약, 배서, 주식의 인도에 의해 양도된다. 장부상 주식은 새로운 주주가 중앙증권예탁원에 등록됨으로써 양도된다.

○ 등록자본

최소 등록자본은 200만 체코 코루나이며, 특별법에 의해 유로화 장부기록이 허용되는 회사의 경우 8만 유로이다. 회사등록을 상업 등기소에 신청하기 전(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그 이전)에 등록자본의 최소 30%가 불입 완료돼야 한다.

○ 집행기구

주식회사의 집행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 임원은 주주총회(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감사회)가 선출하고 해임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감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활동 및 주식회사 운영사항을 감사하는 감사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회사직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감사회 구성원 1/3을 직원이 선출한다. 이외에, 주식회사는 이사회나 감사회 대신 관리위원회 및 단독 이사를 둘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s.r.o.: Společnost s Rucením Omezeným /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체코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형태의 한 가지로,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선택하는 회사 설립방식이다. 설립자가 1인인 경우 회사 설립증서(Founder's deed)를 작성하고 설립자가 50명 이하 또는 그룹인 경우, 회사설립계약서(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한다. 이러한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명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회사명에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는 행정적인 약자 spol. S.r.o.“ 혹은 s.r.o.“가 포함된다.

○ 등록자본

회사의 등록자본은 주주가 제공한 출자금으로 구성된다. 각 주주가 출자하는 최소 등록자본은 1코루나이다. 그러나 적은 출자금의 경우 파산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법인설립 시 일반적으로 최소 1만 코루나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회사를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현물 출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는 현물 출자, 전문가가 결정된 가치, 그 가치를 결정한 전문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최소 납입 출자금의 30%는 불입되어야 한다.

○ 지분관계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주의 회사 참여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지분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지분당 투표수는 1코루나당 1투표권(조합규약에 의거,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음)이며, 부채에 대한 책임은 상업 등기소에 등록된 지위에 따라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쉽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양도가 제한되지 않고 조건이 붙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공용인증서(Common Certificate)"라 불리는 공인증서를 통해 양도할 수 있다.

○ 집행기구

유한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단하다.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유한회사의 집행기구는 한 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이사 수가 제한되지 않지만,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에 이사의 수가 명시돼야 한다. 상임이사는 주주총회(회사의 최고 기구) 또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독 주주가 임명한다. 각 상임이사는 설립자 증서나 회사설립계약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C: Osoba Samostatně Vydělečnická)는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설립등기 필요 없이 영업 허가서(Trade license) 등록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기업이익금 및 자금의 개인적 사용이 자유로우나, 기업채무에 대해 대표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통상 체코 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 허가서를 획득해야 하며 영업허가 신청에는 사업종류에 따라 일반 신청 부분과 특별허가 신청 부분이 있다.

○ 영업 허가서 신청 서류

- 신청서 제출(이름, 국적, ID 넘버, 생일, 영구거주 정보, 체코에서 거주와 거주 허가증서, 체코 내 사업장소와 구체적인 분야 기재)
- 무범죄경력 증명서(공증 번역 필요, 3개월 이내의 문서만 효력)
- 외국인일 경우 거주허가증 제출(장기체류 비자 또는 장기 거주허가증)
- 사업장에 대한 법적 증빙(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확인서)

○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거주 허가증이 필요하고 거주 허가 기간까지 영업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장기거주 허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영업 허가소(Trade License Office)에 임시 확인서(신청자가 영업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확인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장기거주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시 허가서는 제한적으로 유효하며, 임시 확인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기거주 허가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KPMG (Korean Desk)

전화번호	+420)222-123-101
주소	Pobrezni 1a, 186 00 Praha 8
홈페이지	http://www.kpmg.cz
이메일	hhhwang@kpmg.c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황현동 회계사)

○ Deloitte (Korean Desk)

전화번호	+420)737-210-722
주소	Prokesovo namesti 2020/6, 702 00 Ostrava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cz/cs.html
이메일	hyungsokim@deloittec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형수 회계사(Hyung Soo, Kim))

○ Advokatni kancelar FUTEJ &Partners

전화번호	+420)777-111-427
주소	Thakurova 676/3, Dejvice, 160 00 Prague 6
홈페이지	http://www.futej.cz
이메일	park@futej.s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병성 변호사(Byung Sung, Park))

o Iora Legal, Advokatni kancelar

전화번호	+420)606-810-032
주소	Novodvorska 1010/14, 142 00 Prague 4
홈페이지	http://www.iora.cz
이메일	petr@iora.cz

o Kinstellar

전화번호	+420)221-622-111
주소	Palac Myslbek, Na Prikope 19, 110 00 Prague 1
홈페이지	https://www.kinstellar.com/locations/detail/prague-czech-republic
이메일	prague.reception@kinstellar.com

o AK Janousek

전화번호	+420)607-909-192
주소	Badeniho 291/3, 160 00, Prague 6
홈페이지	https://www.janousekadvokat.cz/
이메일	jiri.janousek@janousekadvokat.cz

o Dentons Europe CS LLP

전화번호	+420)236-082-111
주소	V Celnici 1034/6, Prague 1, 110 00
홈페이지	http://www.dentons.com
이메일	prague@dentons.com

o Havel & Partners

전화번호	+420)255-000-111
주소	Florentinum, reception A Na Florenci 2116/15,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havelpartners.cz/en/
이메일	office@havelpartners.cz

<자료원 : 각 회계/법무 법인 홈페이지, 프라하 무역관>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법인 폐업 개요

법인은 상업등기에서 법인을 말소하는 날로부터 법인이 폐업(Termination)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폐업의 경우 법인설립의 사업목적이 달성되거나 관련조직의 사업변경, 분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다. 반면, 불법적인 행위,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등의 요청 등 때문에 법원에 의해 폐업이 결정될 수 있다.

2) 청산 없는 폐업

청산 없는 폐업은 합병(Merger), 분할(Division), 회사형태 변경 등으로 법인의 승계자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산 없는 폐업에 관한 법은 Act No.125/2008 Coll. 에 명시돼 있다.

3) 법인 청산(Liquidation)

법인 청산은 대부분 소유주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상업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 이뤄지며,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소요된다. 유한회사 청산의 경우 법인 폐지에 대한 총회(또는 단독 소유자)의 결정에 관한 공증문서를 준비 후 상업등기소에 청산절차 시작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취소 등록, 직원의 사회보장세 및 건강보험 취소 등록, 청산절차 시작 후 재무제표 작성 등 세무와 회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상업등기소에서 법인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 진행은 법인 등기 해지뿐 아니라 세무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등 법원, 재무부, 세관 등 제출하는 장소가 각각 다르고 절차 또한 외국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지 내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법인 파산

체코 파산법(Act No.182/2006 Coll.)에 의해 유동성 조건(Liquidity test) 또는 대차대조표 조건(Balance Sheet Test)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유동성 조건의 경우, ① 최소 2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② 30일이 지난 채무가 있으며, ③ 이러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차대조표 조건의 경우, ① 최소 2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② 동시에 총 채무총액이 자산의 가치(향후 기업운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 포함)를 초과할 경우가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파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는 파산 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 없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파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자도 해당 법인의 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산 절차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시작되며, 법원의 판결로 파산이 결정된다. 파산절차는 체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파산 등록부(<https://isir.justice.cz/>)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22.40 체코 코루나 (체코 중앙은행, 2020년 11월 13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7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331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9
비고	<p>2020년 체코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30 체코 코루나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14,600 체코 코루나이다.</p> <p>체코에서는 직종별 임금체계로 직종에 따른 임금차이가 크며, 또한 지역별로도 임금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학력 보다는 경력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대학졸업자라도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대학 졸업생이라고 해도 경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체코에서는 한국처럼 대규모 대졸 공채 시스템이 아니므로 대졸 사무직 초임으로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대졸 사무직 초임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경영지원(Specialist) 월평균 임금 기준이며, 고졸 생산직 초임도 생산직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학력은 고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p> <p>체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임금동향은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분기 체코 월평균 임금: 34,271 체코 코루나 (전년동기대비 명목임금인상률 0.5%, 실질임금인상률 -2.5%) ○ 2020년 2분기 지역별 월평균 임금 동향 (체코 코루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Prague): 42,435 - 중앙 보헤미아(Central Bohemia): 36,134 - 남부 보헤미아(South Bohemia): 31,194 - 플젠(Plzen): 32,681 -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 29,514 - 우스티(Usti): 31,922 - 리베레츠(Liberec): 30,819 -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32,521 - 파르두비체(Pardubice): 30,575 - 비소치나(Vysocina): 30,971 - 남부 모라비아(South Moravia): 33,049 - 올로모우츠(Olomouc): 30,802 - 즐린(Zlin): 30,105 - 모라비아-슬레지아(Moravia-Silesia): 30,793 ○ 2019년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체코 코루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직(Manager): 78,832 - 전문직(Professionals): 51,862 - 기술직 및 준전문가(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39,635 - 사무지원(Clerical support workers): 29,784 - 서비스 및 판매직(Service and sales workers): 25,272 - 생산직(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29,805 				

<자료원 : Hays Salary Guide (2019년), 체코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노동법 및 고용관계 관련 법규
 - 노동법(The Labour Code) Act No. 262/2006 Coll.,
 - 고용법(The Employment Act) Act No. 435/2004 Coll.,
 - 노동감독법(Labour Inspection) Act No. 251/2005 Coll.,
 - 최저임금 및 위험근무수당 관련 법령(Government Decree on Minimum Wage and the Lowest Levels of Guaranteed Wage, Definition of a Hazardous Work Environment and Extra Pay for Work in a Hazardous Work Environment) Decree No. 567/2006

- 노동계약 포함내용: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회사 취업 금지 조항(퇴직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수습기간,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이다.

- 노동계약 기간: 계약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가진다. 기간제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첫 계약 포함 최대 3회)하다. 수습기간은 일반직은 3개월이며, 관리직은 6개월까지이다.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초과근무 제외)은 주당 40시간이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휴식시간: 근로자가 최소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4.5시간 연속 근무 시 최소 30분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다음 교대 시작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소 12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근무는 고용자가 예외적으로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당 8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요청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만큼 근무 일수에 휴가를 주거나,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휴가

- 연차휴가
노동법 상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계약해지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연간 5주의 휴가가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는 노동법 개정(No. 285/2020)으로 연차휴가가 기존의 근무일 기준에서 근무시간 기준으로 변경된다. 연간 최소 4주 연차휴가는 동일하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는 120시간의 연차휴가가 주어짐)

- 출산 및 육아 휴직
출산 휴가는 28주(쌍둥이는 37주)이며, 최근 2년 이내 근속 일수가 270일(약 1년) 이상인 경우 출산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가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시행할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정부지원금을

받음.), 육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병가

병가의 경우 처음 14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60%를 고용주가 부담한다. 15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

해고

노동법상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 해지 통보(고용주에 의한 해고, 직원에 의한 사직), 노동법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즉시 해지, 수습기간 내의 해지, 기간제 고용계약의 만료, 직원의 사망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직원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허가 만료, 추방, 근로 허가(Work permit) 또는 근로를 위한 장기비자 만료로 인해 고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 고용주에 의한 해고: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체코 노동법 52조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된다. 해고 사유는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 구조변경에 따른 근로자 수 감축,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장기적인 업무능력 상실,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의무 위반, 근로자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서면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 해지 통지: 고용주나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전(통지한 날짜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금

체코는 한국처럼 퇴직금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고용계약이 노동법 52조의 사유로 고용주에 의해 종료되거나, 혹은 같은 사유로 합의에 의해 근로 관계가 해지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개월분의 평균급여를, 2년 이상이면 3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의료진단서를 토대로 근로자가 산업 재해나 직업 질병, 또는 직업 질병의 위협에 노출돼 있어 더이상 현재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근로자의 작업장이 최대 유해물질 노출 최대 허용 한도 수준에 이르러 관할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고용관계가 해지되면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최소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체코인뿐만 아니라 체코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 증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체코의 건강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입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료비는 대부분 무료(미용성형, 침술, 미용목적의 치과 치료 제외)이다.

체코에서 건강보험(Zdravotni Pojisteni)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건강보험 가입 시 7곳의 보험회사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을 공제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정부에 의해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지 않는 사람은 의료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 요율

- 건강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13.5%로 근로자 4.5%, 고용주는 9%를 부담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13.5%를 부담함.

○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는 경우

- 26세 이하의 부양 자녀
- 노령연금 수령자 및 장애연금 수혜자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가 중인 경우
- 최대 7세까지의 아동 또는 15세까지의 두 명의 아동을 전일제로 돌보는 사람
- 노동사무소에 등록된 구직자
- 저소득층으로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과 보호자

고용보험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체코에서 지난 2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소득활동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 실업수당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EU 시민으로서 거주 비자를 소유하거나 EU가 아닌 제3국 시민의 경우 영주권을 소유해야 하며 동일하게 지난 3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 고용보험 요율

- 고용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 1.2%로 고용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담은 없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1.2%를 부담함.

○ 실업수당

- 구직자로 등록된 실업자만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는 구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5개월, 50세에서 55세까지는 8개월, 55세 이상인 경우는 11개월임.
- 실업수당 및 재교육 수당 금액은 이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처음 2개월은 이전 평균 근로소득(세후기준)의 65%, 그다음 2개월은 50%, 나머지 기간은 45%로 산정됨. 단, 심각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 기간 이전 평균 근로소득의 45%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이전 보험료 기준의 처음 2개월은 65%, 그다음 2개월은 50%, 나머지 기간은 45%를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

산업재해(Accident at work, Pracovni uraz)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로, 작업장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상해도 포함된다. 단, 출퇴근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업병과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종업원이 입은 피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매 분기별로 직원 수와 임금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며, 근로자의 부담은 없다. 산업재해보험은 고용 계약 체결 시 모든 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s, Nemoc z povolani)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유해 요인으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직업병으로 간주되는 질병은 정부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피부질환 등 6가지 분야의 85가지의 직업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병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보상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직업병은 체코 내 18곳이 있는 직업병 센터(Stredisko nemoci z povolani)에서만 진단 권한이 있으며, 일반 의사를 방문해 직업병 센터 방문 진단서를 발급해 받을 수 있다.

○ 산업재해 보상 자격조건

- 업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 혹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고
-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직원이 부상을 입어야 함.

- 부상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며, 직원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아야 함.
- 직원이 안전규정을 심각하기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직원은 사고 당시 취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함. (보통 부주의는 무모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 보상

- 수입상실 대한 보상: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 불가한 경우 질병 보험이나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은 사고 이전 급여를 기초로 결정된다.
- 고통에 대한 보상: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일회성으로 일시불로 지급된다. 금액은 직업병 센터의 의학적 평가 점수에 의해 산정된다.
- 치료비 보상: 건강보험으로 부족한 치료비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의약품 비용,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 손상에 대한 보상: 산업재해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품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의류, 수하물, 차량 등의 물품에 대한 손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활동(예를 들면 가족 돌보기)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 사망 보상: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치료비, 장례비, 유족 생활비, 일시 지급 위로금 등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금보험(노령연금, Starobni duchod)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연금보험은 체코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며, 65세(1971년생 이후) 이상부터 연금보험 납부기간을 만족한 경우(2018년 이후 35년간 납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 요율

- 연금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총 28%로, 고용주는 21.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6.5%를 부담함.
- 질병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28%를 부담함.

○ 연금보험 납부 기간(피보험 기간)

- 납부기간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2018년 이후인 경우 35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함.

질병보험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질병보험(Nemocenske pojisteni)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질병보험은 가입은 의무(고용주가 부담)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질병보험 가입자는 병가, 출산수당, 돌봄수당(아픈 가족구성원 또는 학교폐쇄 등의 요인으로 아동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질병보험 요율

- 질병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2.1%로, 고용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없음.
- 질병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2.1%를 부담함.
- *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2.3%에서 2.1%로 변경

○ 질병보험 혜택

- 근로자는 고용계약 첫날부터 질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질병보험 납부 후 3개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병가를 낸 경우) 14일째까지는 유급으로 고용주가 임금의 60%를 부담하며, 15일째부터는 질병보험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15일째부터 질병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회보장세 한도 및 신고

○ 사회보장성 보험 한도: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2008년부터 사회보험 적용대상 소득의 한도(체코 월 평균임금의 48배)가 설정돼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 한도 금액까지만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 2020년은 사회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1,672,080 체코 코루나
- 건강보험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사회보장세 신고: 근로자의 채용 또는 퇴직이 발생한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장보험은 지역별 사회보장보험공단(CSSZ)에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 건강보험 회사에 따라 VZP, RBP, OZP 등 다양한 보험사에 신청한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세 대상 및 과세소득

체코에 등록된 사업장 또는 실질적인 관리조직이 있는 기업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법인세 대상이 된다. 법인세는 체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및 비거주자의 체코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 법인세율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9%이다. 기본투자자금(Basic Investment Funds)에는 법인 소득 세율 5%가 적용되고 특정 연기금(Pension Funds)은 0%의 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기간 및 납부

과세기간은 역년* 또는 회계연도(세무당국에 변경 신청한 경우)이며, 세금신고서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다. 직전 세금 부과액이 3만~150만 체코 코루나인 경우, 이전 세금부과액의 40%인 선급금을 분기별로 지불해야 한다. 직전 세금 부과액이 150만 코루나 이상인 경우 선급금은 이전 세금부과액의 1/4이며 분기별로 선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역년: 책력에서 정한 일 년. 태양력에서는 평년이 365일, 윤년이 366일이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대상 및 과세소득: 체코 거주자(체코에서 지난 12개월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는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Non-residents)의 경우 체코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활동 수입, 자본 소득,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은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세 과세표준을 사회보장세의 근로자 부담분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포함(월 총임금의 1.338배)함으로써, 평균 실효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5%보다 높아진다. (소득에 따라 다르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포함하면 세전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총 세전 임금의 대략 30% 정도임) 단,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적용 최대한도(전년 연평균 임금의 4배, 2020년 기준 연간 1,672,080체코 코루나)이상 소득에 대해 추가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을 납부해야 한다. 연대 기여금은 최대한도를 초과한 소득금액(초과분) 대해 7% 세율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말 이전)에 해당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 체코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체코지사에게 의해 직접 고용된 외국인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현지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지점)는 소득세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체하는 연말정산서를 준비해 준다. 외국 회사가 계약에 따라 체코 회사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역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도 세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반기 또는 분기별 선급금을 납부하고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 개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은 고용주의 경우 총 33.8%, 근로자의 경우 총 11%임.

- 건강보험: 13.5%(고용주 9%, 근로자 4.5%)

- 사회보장보험

- 연금: 28%(고용주 21.5, 근로자 6.5%)

· 질병보험: 2.1%(고용주 2.1%, 근로자 0%)

· 실업보험: 1.2%(고용주 1.2%, 근로자 0%)

○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산정 간단 예시

- 월 총임금(Gross Wage, Hrubá mzda)이 50,000 체코 코루나 일 경우,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은 총임금(Gross Wage)이 아닌 고용주의 건강보험과 사회보장보험 요율인 33.8%를 포함한 금액(Super Gross Wage, SuperHrubá mzda)임.

· 소득세 계산식: $[50,000 + (50,000 \times 0.338)] \times 0.15 = 10,035$ 체코 코루나(소득세 할인 및 감면 적용 안 한 금액)

○ 2020년 11월 19일 체코 하원은 고용주 부담금을 포함하는 소득세 과세기준인 Super Gross Wage(Superhrubá mzda)의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소득세율은 15%로 동일하나 과세기준이 Super Gross Wage가 아닌 총임금(Gross Wage, Hrubá Mzda)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소득세가 감소한다. 또한, 연대 기여금이 적용됐던 고소득자(월수입이 전년 월평균 소득의 4배 이상)의 경우 2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소득세 수입의 감소로 예상되는 재정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변경 가능성도 있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종 논의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소득세 적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대상: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체코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한 물품, 일반적인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체코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직전 12개월간 매출(Turnover)이 100만 코루나를 초과하는 업체는 VAT 납부자로 등록 후 VAT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율: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는 21%가 적용되며, 식품류(과자, 커피, 차 등 포함), 음료, 의료치료(Medical Treatments)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5%가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특정 서적과 제약품,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됐으며, 2016년 12월부터 모든 호텔 및 숙박업과 식당을 시작으로 시행된 EET(전자매출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등록단말기 구입 및 설치 등의 비용항상을 고려하여 식당에서의 식음료(주류 제외) 서비스에 대한 VAT를 기존 21%에서 15%로 인하했다.

2020년 5월 1일부터는 EET 3차, 4차 시행을 대비해 EET가 새롭게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EET 3차, 4차 시행이 연기됐으나, 코로나 19의 경제적 타격완화 및 물가안정 등의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인하는 예정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요식업 서비스, 생맥주 판매, 미용 서비스, 전자서적 및 오디오북 등의 부가가치세가 기존의 15%~21%에서 10%로 인하됐다.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VAT 인하를 시행해, 숙박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행사, 스포츠 시설 등의 VAT를 기존 15%~21%에서 10%로 인하했다.

-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 15% 식료품(마트에서 구입), 테이크 아웃 및 배달 음식, 대중교통서비스,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등

- 10% 요식업 서비스, 생맥주 판매, 숙박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미용 서비스, 자전거 수리, 전자서적 및 오디오북, 유아용 식품, 특정계약 등

기본 과세 보고기간은 1개월이며,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전년도 매출액이 100만 코루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 보고기간을 분기로 선택할 수 있다. 2016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의무 납세자들은 전자 부가가치세 관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체코 내 등록된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명세서는 www.daneelektronicky.cz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체코어만 서비스된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거나 주 예산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간접세 중 하나이다. 체코에서 생산되거나 체코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며, 세

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는 2010년 인상 이후 9년 동안 동결됐으며, 체코 보건부 WHO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해제품에 대한 소비규제를 위해 체코 재무부는 2020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를 인상했다.

○ 주요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 및 세율

- 담배: 세율 30%, 1개당 1.61체코 코루나 부과 (최소 세금금액 1개당 최소 2.90체코 코루나)
- 주류: 40% 알코올 함유 제품의 경우 0.5리터당 64.5코루나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체코 코루나는 완전하게 태환 가능하며 2017년 4월 체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결정하면서 현재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체코 코루나가 움직이는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다.

1) 2013년 11월 ~ 2017년 4월까지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개요

체코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예방 및 인플레이션 2% 수준으로 유지해 체코 물가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외환개입을 통해 유로화 대비 체코 코루나 환율을 27코루나/유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3년 IMF가 제안한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 이전인 2012~2013년 24.7~25.9코루나/유로 수준이던 환율이 개입 이후에는 27코루나/유로 수준으로 유지됐다.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시작된 이후 체코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2013년 11월 체코중앙은행의 환율 개입 이후 2014년 체코의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7.5% 증가를 기록했다.

2) 2017년 4월 6일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중단

2016년 말 원유가격 상승을 반영한 식품, 연료가격 상승 및 임금상승의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초과하고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형성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이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측됐다. 환율 유지를 위한 투입금액도 점차 늘어났다. 2013년 11월 환율시장 개입 이후로 27코루나/유로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총 약 2조 코루나를 투입했으며, 2017년 3월에만 약 5,000억 코루나(약 200억 달러)를 투입했다.

중앙은행은 2017년 4월 6일 임시 금융정책회의 열어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결정하고 즉시 발효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주요 목표가 달성됐다는 관점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 중단은 코루나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일 것임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3) 외환시장 개입 중단 이후 환율 변동 추이

외환시장 개입 중단 이후 환율은 예상외로 큰 폭의 변동이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체코 코루나가 유로화 대비 강세 양상을 보였다. 2018년 전체 평균환율은 2017년(26.33코루나/유로)보다 2.6% 감소한 25.64코루나/유로를 기록했으며, 2019년 평균환율은 25.7을 기록했다

4)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체코 코루나 약세

2020년 초반에 상승 추세였던 코루나 가치가 코로나 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안전자산(달러, 유로화 등) 선호로 2월 중순부터 급격히 하락해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개입 중단 이후 최초로 2020년 3월에는 유로 대비 코루나 환율이 1유로당 27코루나를 넘어서다. 2020년 2분기 평균 환율은 1유로당 27.05코루나로 지난 5년 중 가장 약세를 보였으며, 가을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0월에도 1유로당 27.20코루나로 코루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체코 재무부는 9월 경제전망 자료에서 2020년 유로 대비 코루나 환율을 1유로당 26.3코루나로 전망했으며, 2021년에는 점진적인 코루나 절상이 이뤄져 2021년 환율은 1유로당 25.8 코루나로 전망했다.

외환 규제

체코의 외환관리는 1995년 10월 1일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코로나화의 완전 태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 거래의 완전 자유화 및 자본 거래의 자유화가 실시(IMF 8조 국)됐으며, 체코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 계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 보유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의무 준비금(reserve fund)과 원천징수세 납부금을 제외하고 체코의 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2020년 현재 체코공화국(이하 '체코')이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창작물(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법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저작권법, 산업디자인법이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는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실용신안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모양, 구조 또는 재료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구성된 제품의 외관이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가지면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총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 색상, 그림, 문자, 숫자 또는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 또는 소리를 포함한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든 기호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체코는 창작의 노력의 고유한 결과인 문학 작품 또는 기타 예술 작품, 과학 작품 등을 보호한다.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기본적으로 각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등록 요건은 국제적 기준과 유사하다. 다만 특허의 경우 제3자가 타인의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특허청에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프라하시 법원에 침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의 경우 출원에 대한 심사 시, 유럽 기준에 맞추어 상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심사를 2019년부터 폐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디자인권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방식심사만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체코는 지식재산권 출원의 측면에서 체코특허청의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41년간 계속된 오랜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2010년대부터 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체코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체코 인구는 약 1,069만 명으로 이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약 533만 명이다. 1인당 GDP(IMF, PPP기준)는 2012년 33,834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40,939달러를 기록했다.

체코 정부는 서유럽 대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코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유럽 최저를 기록하며 가파른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가계 총 가처분 소득은 전년대비 6.0% 상승한 3조 90억 코루나(약 1,35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전년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체코 재무부 2020년 9월 경제전망 기준) <자료원 : 체코 통계청, Statista, IMF>

소비 성향

체코는 과거 동구권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 중 비교적 풍족한 소비 수준을 누렸으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직 월평균 소득이 1,500달러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중·저가 품목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체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총동구매 성향이 약한 편이고 다소 엄격한 계획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명상표에 대한 맹종 현상이 낮은 편으로, 상품 구입 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 수준은 월평균 명목 임금이 2020년 2분기 기준 34,271 코루나(약 1,540달러) 정도로 서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저렴한 기초 의식주 비용, 교육비 및 의료비의 전액 정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특히 운동용품, 레저용품, 문화용품 등은 고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 정부의 사유재산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은 계층이나 신흥 비즈니스맨 등은 고급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3% 내외는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구매가 활발하며, 7~8월의 휴가철은 구매 활동이 침체하므로 이를 대비해 수입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2월 및 9~10월에 수입을 확대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체코 소비자의 소득 불안정 및 향후 재정상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가계 경제상황 악화가 가시화될수록 소비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자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돼 타깃소비자에 따른 적절한 가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소비자 구매 선호도

유럽 최저 실업률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2019년 매년 전년대비 7%~9% 수준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체코인들의 전반적인 소비가 증가했다. 유기농,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제품 선호 등 새로운 소비 패턴이 도입되고 있으며, 제품도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다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경제타격으로 가격 대비 품질 위주의 합리적인 소비성향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브랜드 제품 대신 PB 제품을 구매하고, 30%는 기존보다 저렴한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필수품이 아닌 개인적인 만족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제품 선호 경향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였다.

○ 온라인 구매 증가

최근 인터넷 환경이 향상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구매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코 전자상거래협회(APEK) 및 Heureka.cz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550억 코루나(약 65억 4134만 달러)를 기록했다. 체코는 유럽에서 온라인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3년 이후 매년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와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구매가 보다 더 활성화되면서 전년대비 약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다롭고 합리적인 소비로 유명한 체코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며 구매하는 편이며, 온라인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제품이다. 그 외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 취미용품, 미용, 건강제품 역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Tesco, Lidl, DM 등 대형 유통업체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해 체코 최대 온라인 몰인 Alza.cz도 식료품 판매를 시작하고, 최대 온라인 식료품 소핑몰인 rohlík.cz도 전년대비 큰 매출성장을 기록했다.

체코 사람들은 온라인 구매 시 집으로 직접 배달받는 것보다는 매장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건을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교적 높은 배달비용,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결제(카드, 구글페이 등)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거래 확대로 카드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2006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에 생산공장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판매 신장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일반 생활 소비재의 현지 시장 진출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화장품은 제외한 여타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체코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Sephora, Douglas, Notino 등 주요 체코 화장품 전문점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K-Beauty' 카테고리를 만들어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SNS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도 한국 화장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팩의 경우 매장의 마스크팩 코너의 대부분이 한국 화장품 제품일 정도로 가장 활발히 한국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외에 토너, 세럼, 아이크림, BB크림 스크럽 제품 등 다양한 한국 기초 화장품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K-POP의 경우, 전세계적인 K-POP 인기와 함께 체코에서도 일부 팬층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으며, 한-체코 K-POP 행사도 지속되고 있다. 2000년부터 체코에서 꾸준히 상영되고 있는 한국영화도 점차적으로 고정적인 팬층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매년 프라하에서 열리는 아시아 영화제 및 까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에서도 한국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다.

한국 식당은 프라하 지역에 약 20개 이상, 한국 식품점은 5개 정도 운영 중이다. 한식은 일본 음식보다 저렴하나 현지 음식보다 약 2~3배 비싼 편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이나 중국음식과 같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체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채식 트렌드 함께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한국음식의 인기도 증가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체코 수입업체의 거래방식과 관련한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의 어떤 회사로부터 특정 제품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제품 공급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제 3의 기업에서 상당히 좋은 거래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코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독일 영향으로 안정 지향적인 사업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어 신규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에는 상당한 인내를 요한다. 그러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 바이어들도 기존 거래선 외의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부유럽에 속한 체코는 이미 개방화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한국 기업이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한국상품 및 기업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순조로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시장 특성과 수입 업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업체가 체코 수입업체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거래 관련 종합 정보 일괄 송부

체코 업체들은 생소한 외국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작할 때 잦은 교신보다는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 희망 서신,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샘플, 가격정보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처음에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단한 자사 소개와 거래를 희망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회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코 업체와 교신을 시작할 때에는 체코 진출을 위한 가격 설정에 철저히 준비해서 접근해야 한다. 첨부 파일을 보낼 때는 파일명을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바꿔서 보내야 하며, 한국보다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너무 큰 용량의 파일이나 동영상은 대용량 파일 첨부 또는 링크를 통해 송부하는 것이 좋다.

2) 샘플 요청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체코업체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샘플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체코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제품을 생소하게 여기기도 하며, 특히 운송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강점으로 앞세워 체코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체코 업체들은 샘플을 통해 제품의 상태, 품질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특히 저가의 소비재, 화장품의 경우 관행적으로 무료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며 샘플비용 및 운송비 역시 지불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샘플 발송 시에도 체코 부가가치세(VAT) 의무 부과 기준인 22유로 이하의 금액을 적어 보내야 불필요한 세관 절차를 피할 수 있다.

3) EU 인증

비 EU 국가와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바이어들은 EU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CE와 CPNP 등 품목에 따른 적합한 EU 인증 보유는 체코 시장 진출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국내제품에 관심이 있어 논의하던 과정에 인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제 거래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바이어들 특성에 따라 직접 인증을 대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업이 인증을 자체적으로 취득해오는 것을 선호한다. EU 인증은 체코뿐만 아니라 모든 EU 국가 진출 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이 어떠한 인증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사전에 파악 후 미팅에 임하는 것이 좋다.

4) 지속적, 적극적 사후관리

거래에 필요한 종합 자료를 송부하고 2~3주 후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바이어의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그 이전에 체코 업체에서 회신을 해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이 송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하게 필요한 품목이 아닐 경우 메일에 대한 회신이 늦은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 더불어 체코 역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므로 유선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려하며 이메일 교신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다. 체코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답장해올 경우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에 국내업체 측에서도 바로 교신에 응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한 경우,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 업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데, 상담 시 약속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사의 제품정보를 제공해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응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쯤 답신을 하겠다고 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상담에서 거래 성사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산업재의 경우에는 1~2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우리 기업의 각별한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5) 거래조건 제시 시 유의사항

체코 바이어와 거래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성사 전 정확한 운송비 부담 주체 및 지불 항목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다. 체코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주로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격을 제시할 때 FOB Korea(Busan)보다는 CIF Hamburg로 하는 편이 바이어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나, 비 EU 국가와의 거래 경험이 전무하거나 운송 처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DDP(Door to Door)로 운송조건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국 측에서 전체 운송절차를 처리하고 운송비는 인보이스에 포함해 바이어측에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또한, 최소 주문량은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므로 (특히 첫 거래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거래 체결에 도움이 된다.

첫 거래 시 가격 오퍼를 받은 경우, 체코 바이어들은 가격이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을 경우 가격협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바로 상담 진행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바,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둔 가격 제시보다는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격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체코 업체에 가능한 가격을 제안하라고 하는 것은 현지 문화와 잘 맞지 않아 거부감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급적이면 피하고, 품질과 A/S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산출한 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의 체코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근 국가의 대형 수입상을 통해 외국산 물품을 간접 수입해 오고 있다. 즉, 체코 바이어들의 자본력이 아직은 취약한 관계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데 따른 거래조건(한국 수출업체의 L/C 또는 T/T 선호, 약 2개월의 인도기간, 높은 수준의 최소 주문량 등)을 충족시키기 어렵지만, 소량씩 정기(일주일 내)에 외산(60~90일)으로 공급해주는 인근 국가의 대형 바이어로부터 간접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EU 국가 내에 법인을 운영하거나 적시 출고가 가능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점이 있다.

6)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체코의 경우 사회주의 생활양식 및 의식이 아직도 중·장년층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코 바이어의 거래관행을 수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체코에서는 아직 후불결제 시스템이 통용되고 있어 계약 체결 시 100% 선불 결제를 선호하는 국내기업과 지불 조건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체코 바이어들은 비 L/C 거래를 선호하고 거래 착수 시부터 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거래 관행과 자본력 취약에 따른 독일 등 주변국의 수출업체들이 신용 거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L/C 거래가 선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주요 은행들이 L/C 개설 시 수입 금액의 110% 정도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어 3개월 정도 자금 회전이 막혀 금융 부담이

크고, 아직 서구 기준의 현대적인 금융 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L/C 개설 및 조건 변경 등 수속이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은행을 통한 서류 거래로 거래 자료가 100% 노출돼 절세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규모가 커진 수입상이나 대아시아 교역에 익숙해진 수입상들은 점차 L/C 거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경우 주문과 함께 T/T로 20~30%의 선수금 송금 후, 선적 서류의 사본 확인과 함께 잔금 역시 T/T로 송금하거나 30% 정도의 선수금 분만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해 D/P로 거래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외에도, 선수금을 T/T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신용장 개설 또는 은행을 통한 D/P 거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L/C 거래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 사본을 요청,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관해 처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공항세관 등은 수취인 여부만 확인되면 선적 서류 원본 없이도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한 이메일 탈취 등을 통한 무역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체고를 경유한 입금 사기부터 교신 도중 국내기업 혹은 바이어를 대신하여 이메일을 대신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 사기가 진행되고 있어 인보이스 상의 은행명, 은행주소, 수상한 이메일 등은 이중 확인을 통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처음 접촉은 언어 소통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

일반적으로 체코 무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최근 많이 좋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호 간의 오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처음 접촉 시 구두 영어(전화)보다는 e-메일을 이용해 교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체코 비즈니스계의 e-메일 사용은 보편화돼 있다.

2) 이메일을 통한 소통 시 유의할 점

한국에서 오는 이메일이 스팸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메일 발송 후 2~3주 이내에 답신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선으로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코에서 보낸 메일도 한국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거래논의 시 KOTRA 프라하 무역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체코업체의 메일을 받은 경우, 완벽한 답신을 바로 할 수 없더라도 수신했음을 알리고 답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답신을 언제쯤 보내겠다고 알림으로써 상대방과 단절 없이 유연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유를 가지고 친절·솔직하고 약속은 꼭 지킬 것

현지 업체들과 연락 시 공격적인 방법보다는 인내심 있고 친절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너무 빈번한 이메일과 전화연락은 체코 업체들이 대체로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체코는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검토 후 거래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시 국내기업과의 교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기업 측에서 주로 당황하는 부분이나 체코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교신을 중단하는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히 알려서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상호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 상담회에 참여했던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상담 이후 보내주기로 했던 자료(카탈로그, 가격경보, 비즈니스 모델 등)를 전혀 보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상담 약속은 최소한 2주 전에 약속하고 확실한 통역으로 오해를 줄일 것

체코를 방문해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미리 체코 업체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영어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을 사용해야 원만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약속은 2~3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며 7~8월, 12월~1월 초는 하계휴가 및 크리스마스 & 연초 휴가로 인해 1~2주가량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종종 일부 국내기업은 이메일이 아닌 1:1 미팅을 통해 회사 및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 무작정 바이어와 미팅을 잡는 경우가 있으나 체코 바이어들은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없을 경우 이러한 미팅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친분을 쌓으면서 장기적 거래로 추진

장기거래가 단기거래보다 효과적이므로 친분을 쌓으면서 장기적으로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많은 제품이 체코에서 독일로 수출되므로 체코 진출을 독일로의 관문으로 여길 수도 있다.

6) 화상상담 스케줄과 달리 품목이 적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코로나19로 화상상담(비대면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화상상담 주선을 할 경우 약 1달 전에 서로에게 공지를 하여 스케줄을 잡는 것이 보통인데, 품목이 적합할 경우 바이어측에서 스케줄보다 빠르게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빠르게 대응하여, 상담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한국의 B사

B사는 2013년 4월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프라하를 처음 방문, 총 6개사와 상담했다. B사는 본 사절단 참여를 통해 체코에 시장성이 있음을 감지했으며, 상담장에서 만났던 X사와의 거래 성사를 위해 2013년 11월 프라하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했다.

공공조달을 통해 유니폼을 납품 시, 유니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기준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B사는 샘플 제작 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원단 염색을 위한 염료를 장기간 수소문해 다시 도전하고, 첫 주문 시 바이어의 코멘트를 적극 수용해 2차 주문에는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B사는 X사로부터 17만 달러 규모의 첫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첫 주문의 기쁨도 잠시, X사와 첫 거래 시 B사는 바이어와 네 번의 대면 접촉을 했음에도 첫 거래액 결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라하 무역관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및 이메일로 바이어를 접촉했다. 또한, B사의 8월 출장 당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어 미팅에 동석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무역관에서는 X사와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군복조달기업인 K사 또한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을 나누고, K사의 문의가 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B사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체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 공공조달 전문기업인 X사와 K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2) 한국의 S사

화장품 제조업체인 S사인 2015년 말 처음 KOTRA 프라하 무역관과 함께 체코 진출을 타진했다. 본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와 첫 화상 상담회를 통해 제품을 소개, P 바이어 역시 제품의 품질에 만족했다. 그러나 높은 가격의 문제로 협상에 큰 진전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OTRA 프라하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어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6년 '한-불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국내업체 S사와 체코 바이어 P사와 1:1 미팅을 주선했다. 체코의 P사 외에도 협력업체인 F사가 동반했는데 P사는 주로 물류, 도매를 담당하며 F사는 체코 로컬의 소매유통을 담당하고 있어 가격뿐만 아니라 현지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도 큰 진전을 보이게 됐다.

유럽 시장의 화장품 진출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손꼽히는 CPNP 등록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나, S사는 KOTRA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했다. 지사화 서비스와 더불어 소비재 선도기업으로 현지 마케팅을 지원받으면서 체코 F사와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독점계약을 체결했고 온·오프라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확고한 마케팅 전략, 철저한 CPNP 등록에 대한 준비는 S사가 시장 진입할 수 있는 큰 자산이었다. 더불어서 KOTRA의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한국의 A사

여드름 등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탈피하기 위해 2017년 KOTRA 신규수출 기업화 사업에 가입하였다. 1:1로 수출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체코 바이어와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고, 한국을 방문했던 체코 바이어 C사는 미팅에서 A사의 아토피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후 체코로 돌아온 바이어는 샘플을 통해 아토피 등 민감성 피부에 효과가 있음을 현지 소비자 및 거래선을 통해 확인하였고 A사와의 거래를 희망하였으나 당시 내수기업이었던 A사는 유럽 화장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바이어는 A사와의 거래 지원을 프라하 무역관에 요청해왔고, 무역관은 수출전문위원을 통해 유럽 인증에 대한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A사는 수출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유럽 인증 취득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8년 6월, 프라하 무역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MOU를 A사와 C사에 제안하였고, 양사는 소비재 수출대전 사업에서 양측은 체코 및 6개국 독점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그 이후에도 무역관은 체코 현지 동향, 가격 책정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였다. 특히 언어적 문제 등으로 바이어와의 교신이 어려웠던 A사는 수출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바이어와 교신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약 1년간 CPNP 취득을 준비하였다.

A사 제품의 품질에 확신이 있었던 바이어는 A사의 인증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바이어 CPNP 취득을 위해 현지 라벨링 번역, 인증에 필요한 서류 조연 등 A사 유럽 진출을 측면 지원하였다. 2017년 미팅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 기업의 CPNP 취득을 기다린 끝에 2019년 초 A사는 1차적으로 2개 제품에 대해 CPNP 취득을 완료할 수 있었다. CPNP 취득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바이어와 가격조율,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화장품 효능 등에 대한 자료 등 바이어가 필요한 정보와 원활한 교신을 위해 프라하 무역관과 수출전문위원은 1:1 밀착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수출기업이 전무한 국내기업은 인보이스 작성,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 등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바이어와의 미팅에도 수출전문위원과 함께 미팅에 참여, 협상을 이끌어 냄으로써 KOTRA의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20년 수출을 기록하였다.

2020년 3월, 체코 정부는 긴급 수요로 한국의 수송배지 키트 기업을 발굴 요청하였다. 이에 검체 채취 및 수송배지 키트를 정확하게 연결시켜 4.4만 볼 수출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홈코노미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지사화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 품목 강점을 바이어에게 어필하여 수소수 생성기 150개(16,000볼)를 수출하였다.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이루어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체류 허가 종류

단기 비자의 경우 쉹겐 비자(단기 취업 비자)가 있으며, 장기 비자 및 장기 체류 허가는 거주 목적에 따라 유학, 취업(Employee Card, Blue Card 등), 사업, 투자, 가족통합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2012년 6월 1일부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 단기체류

단기체류는 90일 이하의 체류를 뜻하며, 한-체코 사증 면제 협정(양자협정)에 따라 단순방문(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의 경우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코에 체류할 수 있다. 체코 내에서의 체류에 한해 양자 협정상 규정된 요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무비자 또는 유효한 사증을 받아 체코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체코에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90일마다 제3국을 다녀오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취득 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장기체류 희망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사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 코로나19 제한 사항

현재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해 체코 내무부에서 외국인의 입국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코로나19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입국 (또는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 체코 입국 시 검사 등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11월 18일 기준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 외국인 입국 지침 및 위험국 분류가 역학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체코에 입국 계획이 있는 경우 체코에 입국하기 전에 체코 내무부, 주한 체코대사관, 주체코 대사관 등의 공지사항 및 입국관련 정보 확인이 권장된다.

- 체코 내무부 코로나19 관련 입국 정보 : <https://www.mvcr.cz/mvcren/article/coronavirus-information-of-moi.aspx>

3)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2년 6월, 한국과 체코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돼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한국인이란면 여행 및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체코에서 1년간 머물 수 있게 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비자목적 변경)을 할 수 없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협약에 따라 1년 이내에 최대 300건의 비자만 발급한다.

○ 비자신청 조건

-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체코 체류 기간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필요서류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사진 3매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 왕복 항공권/예약 확인서, 또는 귀국 항공권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 또는 체코 출국 교통편 승차권 (영문 출국 항공권/예약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은행잔고 증명서 및 6개월간 거래명세서(1년 체류 시 약 600만 원, 체코어 번역 필요),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본(앞·뒷면 한 장에

복사)

-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 체코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사망/사고치료/질병치료/본국송환 각 항목 최저 보장액 6만 유로 이상)
- 체코 내 주거지 및 업무지 주소(신청서에 기입)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주한 체코대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대리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대사관에 가서 직접 제출해야 함.
- 비자 취득 후 입국했을 때 3일 이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4) 고용카드 (Employee Card)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그린카드가 도입됐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 (Employee card)로 대체됐다. 따라서 EU 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Employee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 절차

- 고용카드가 발급 가능한 직장을 찾는다.
- * 노동부의 Employee card가 발급 가능한 일자리 정보 사이트(<https://www.uradprace.cz/web/en/vacancies-search-1>)에서 일 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 각국의 체코 대사관에서 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체코거주 시 체코 내무부에 신청 가능)

○ 고용카드 발급 시 필요 서류

- 고용카드 신청서 (<https://www.uradprace.cz/web/en/application-form>)
- * 신청서에 반드시 취업예정인 일자리 등록 번호(노동부 Employee card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와 일자리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 여권 (Employee card 기간 +90일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증명사진 2장
- 직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체코 거주기간 동안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용 계약서 (또는 근무계약을 약속을 명시한 서류)
- 전문직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련 자격증
-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서 및 범죄기록증명서

비자 발급 허가 후 Employee Card 발급을 목적으로 한 단기 비자를 받게 되며 여권에 비자가 발행되기 전에 여행자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받은 단기 비자로 체코 입국 후 3일 내에 외국인 경찰서에서 거주지 등록이 필요하며, 내무부에서 본인 생체 인식 데이터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하고 생체 인식 데이터가 포함된 Employee Card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인당 포도주 2ℓ, 술 1ℓ, 담배 200개비까지는 허용된다. 여행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인 1만 유로 이하의 외화는 신고 없이 입국 가능하며, 그 이상의 현금은 입국 시 신고만 하면 출국 시 반출에 문제가 없다. 체코 입국 시 면세 범위는 430유로(육로 여행자 300유로)이다. 입국 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반입 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

재성 물품의 반출 시는 국가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술 면세 범위

- 알코올 도수 22% 초과 - 1ℓ
- 알코올 도수 22% 이하 - 2ℓ
- 스틸와인(Still Wine) - 4ℓ
- 맥주 - 16ℓ

○ 담배 면세 범위

- 궐련(cigarette) - 200개비
- 가는 엽궐련(cigarillo: 3g 이하) - 100개비
- 엽궐련(cigar) - 50개비
- 엽연(파이프용 담배) - 250g

○ 외국환 신고

-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코로 입국 시)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420-234-090-411
주소	Slavickova 5, 160 00 Praha 6 - Bubeneč
홈페이지	http://cze.mofa.go.kr
비고	업무시간 외 비상 연락처(휴대전화): +420-725+352+420

○ 체코한인회

전화번호	+420-777-695-732
주소	Na okraji 439/46, 160 00 Praha 6 - Vešlavín
홈페이지	http://czech.korean.net

○ 프라하 한글학교

전화번호	+420-777-797-630
주소	Santrochova 2, Praha 6, Základní škola Petřín Jih
홈페이지	http://www.prahaks.korean.net

○ 체코-코리아 협회

전화번호	+420-774-915-727
주소	Ustav Dalneho vychodu FF UK, Celetna 20,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cks-korea.cz

○ 대한항공

전화번호	+420-220-116-827
주소	Jungmannova 26/15 1st Floor, Praha 1, Czech republic
홈페이지	https://www.koreanair.com/global/en.html
비고	근무시간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자료원 :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체코한인회, 프라하 한글학교, 체코-코리아 협회, 대한항공>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체코정부

전화번호	+420-224-002-111
주소	Nabrezi Edvarda Benese 4, 118 01 Praha 1
홈페이지	http://www.vlada.cz

○ 체코 산업통상부

전화번호	+420-224-851-111
주소	Na Frantisku 32,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po.cz

○ 체코 외무부

전화번호	+420-224-181-111
주소	Loretanske namesti 5, 118 0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zv.cz

○ 체코 법무부

전화번호	+420-556-779-511
주소	Vysehradská 16, 128 10 Praha 2
홈페이지	http://www.justice.cz

○ 체코 노동복지부

전화번호	+420-221-921-111
주소	Na Poricnim pravu 1/376, 128 01 Praha 2
홈페이지	http://www.mpsv.cz

○ 체코 재무부

전화번호	+420-257-041-111
주소	Letenska 15, 118 1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fcr.cz

○ 체코 내무부

전화번호	+420-974-832-972
주소	Nad Stolou 3, 170 34 Praha 7
홈페이지	https://www.mvcr.cz

○ 체코 교육부

전화번호	+420-234-812-180
주소	Karmelitska 529/5, 118 12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smt.cz

○ 체코 국방부

전화번호	+420-973-201-111
주소	Tychonova 221/1, 160 00 Praha 6
홈페이지	http://www.army.cz

○ 체코 문화부

전화번호	+420-257-085-111
주소	Malezske namesti 1, 118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mkcr.cz

○ 체코 환경부

전화번호	+420-267-121-111
주소	Vrsoviccka 1442/65, 110 10 Praha 10
홈페이지	https://www.mzp.cz

○ 체코 지역개발부

전화번호	+420-224-861-111
주소	Staromestske namesti 6,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mmr.cz

○ 체코 보건부

전화번호	+420-224-971-111
주소	Palackeho namesti 4, 128 01 Praha 2
홈페이지	http://www.mzcr.cz

○ 체코 농림부

전화번호	+420-221-811-111
주소	Tesnov 65/17,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eagri.cz

○ 체코 교통부

전화번호	+420-225-131-111
주소	Nabrezi Ludvika Svobody 1222/12,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dcr.cz

○ 체코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420-266-721-300
주소	Na Florenci 2116/15,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komora.cz

○ 체코 투자청

전화번호	+420-296-342-500
주소	Stepanska 15, 120 00 Praha 2
홈페이지	https://www.czechinvest.org

○ 체코 통계청

전화번호	+420-274-051-111
주소	Na padesatem 3268/81, 100 82 Praha 10
홈페이지	https://www.czso.cz

○ 체코 관세청

전화번호	+420-261-331-111
주소	Budejovicka 7, 140 00 Praha 4
홈페이지	https://www.celnisprava.cz

○ 체코 국세청

전화번호	+420-296-852-222
주소	Lazarska 15/7, 117 22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financnisprava.cz

○ 체코 의약관리청

전화번호	+420-272-185-111
주소	Srobarova 48, 100 41 Praha 10
홈페이지	http://www.sukl.cz/

○ 체코 관광청

전화번호	+420-221-580-111
주소	Vinohradská 46, 120 41 Praha 2
홈페이지	https://www.czechtourism.cz/

○ 체코 중앙은행

전화번호	+420-224-411-111
주소	Na Příkopě 864/28, 115 03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cnb.cz/

<자료원 : 체코정부, 각 정부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22.40 CZK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메뉴)	1메뉴	6.2
2	식품	쌀(Round Grain)	1kg	2.2
3	식품	계란	10개(대)	1.6
4	식품	쇠고기 등심(Hovezi Svickova)	1kg	33.4
5	식품	돼지고기 커틀릿(Veprove Panenka)	1kg	11.6
6	음료	생수 (마트 구입 시)	500ml	0.6
7	음료	병맥주(Pilsner Urquell)	500ml	1.2
8	의료	진통제 (Ibalgin 200mg)	24정	2.4
9	교통	대중교통 기본요금 (프라하 시내버스, 지하철, 트램 통합 티켓)	30분	1.1
10	교통	택시요금 (프라하 도심 기준, AAA택시)	1Km(기본요금 제외)	1.3
11	교통	도심 주차료 (프라하 기준)	1시간	1.8
12	서비스	헤어컷 (한인미용실, 여성 짧은 머리 기준)	1회	33.5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Gasoline)	1L	1.2
14	서비스	경유(Diesel)	1L	1.2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프라하 멀티플렉스, 2D 기준)	성인일반 1장	9.8
16	여가	담배 (말보로)	1갑	5.3
17	숙박	중급호텔(3성급, 싱글, Ibis Praha Old Town 기준)	1박	54
18	임금	월최저임금 (2020년 기준)	법정최저	651.8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연간	29211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25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 노동부, 맥도날드, 테스코, lekarna.cz 등 각 판매처 사이트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체코 코루나(Koruna)로 약칭은 "k" 또는 "CZK"이다. 체코 화폐는 지폐의 경우 100, 200, 500, 1,000, 2,000, 5,000체코 코루나(Korun)의 6종이 있으며, 동전의 경우 1, 2, 5, 10, 20, 50코루나의 6종이 있다.

체코는 EU가입국이나 아직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국민 여론 모두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관광지에서는 유로화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환율이 은행고시 환율(또는 환전소 환율)보다는 불리한 환율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로화를 사용할 경우 코루나로 거스름돈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럴 경우에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용환율을 잘 계산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체코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유로화를 체코 코루나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임의로 팁을 포함하거나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요청해 금액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전방법

주말이나 은행 개점시간 이외에는 호텔이나 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되, 환전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몇 군데를 둘러보고 환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환율을 유리하게 고시해 두고 대신 고율의 수수료(4~5%)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체코 코루나화는 100%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며, 시내 길거리에서 환전을 권유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근래에 새로이 등장한 사기 수법으로, 한 사람이 접근해서 환전을 하라고 권유하면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불법 환전을 했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물론 환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기꾼이므로 절대로 여권이나 지갑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계속 보여달라고 우기면 지나가는 경찰차 혹은 정복 경찰을 불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국인이 체코 화폐 모양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체코 화폐가 아닌 타 국가의 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내 환전소 이용 시 체코 화폐가 맞는지 확인 후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

환전소에서 환전 시 주의할 점으로는 큰돈(1,000유로 이상)을 환전할 시 ID카드 또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태환성: 통화 교환 권리가 보장되어 어떤 목적에서든지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성질.

신용카드 이용

예전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프라하를 포함한 대도시의 대형 쇼핑몰, 중심지 식당, 호텔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아직 소규모 식료품점(Mini Market), 길거리 가판점, 일부 식당, 선물가게 등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곳이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체코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Visa 및 Master 카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방식은 비접촉식(Contactless) 카드사용이 일반적이다. 비접촉식 카드의 경우 결제 시 PIN을 입력하는 방식(서명불요)이나, 한국 카드의 경우 영수증에 서명하는 방식 또는 PIN 넘버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서명 후 카드에 있는 서명과 대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뒷면에 미리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1) 교통상황

체코 도심 대중교통은 트램, 버스, 지하철(프라하만 존재)이 운행되며, 소도시 및 외곽지역의 경우 대부분 버스가 운행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운행시간표의 시간에 거의 맞춰 운행되고 정류장마다 운행시간표가 표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다. 프라하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해 편리하며,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프라하 도심의 경우 출근시간(오전 8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4~6시)에 주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2) 대중교통

프라하를 포함한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으며, 외곽지나 소도시의 경우 버스가 운행되나 간격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용이 더 활발한 편이다.

프라하의 경우 승차권은 지하철, 버스, 트램 등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을 한 번에 커버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편리하다. 1회용 티켓의 경우 단순히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개찰기를 통해 승차 시점을 기록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찰기는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장소는 각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 신문판매소(Tabak), 인포메이션 센터 등이다. 모든 지하철역 안에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트램 및 버스 정류장에도 설치돼 있다.

프라하의 경우 PID Litacka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중교통 여정 검색 및 해당 구간의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프라하 트램 내 승차권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트램에서 바로 구매(비접촉식 결제카드로 가능, 구매 시점부터 효력발생)가 가능하며, 휴대폰 SMS으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모든 승차권은 환승이 가능하나, 금액별 정해진 시간 내로만 이용할 수 있다. 프라하 지역의 성인기준 1회용 승차권의 요금은 아래와 같다.

- 30분: 24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24)
- 90분: 32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32)
- 1일권 (24시간): 110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110)
- 3일권 (72시간): 310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310)

정기권의 경우 Litacka 카드를 사용하며, 정기권 요금은 아래와 같다. 최근에는 정기권을 PID Litacka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결제카드에 등록해 사용이 가능하다.

- 1개월: 550코루나
- 3개월: 1,480코루나
- 5개월: 2,450코루나
- 1년: 3,650코루나

대중교통 이용 중 검표원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한 승차권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유효한 승차권이 없는 경우 최대 1,500코루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중점 단속 대상으로 반드시 표를 구입한 후 승차하고, 승차권을 구입했으나 개찰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무임승차로 간주하므로 항상 개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 징수 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 발급한다.

버스

프라하 시내 중심가는 대부분 지하철과 트램이 운행되어, 전철 구간과 연계되는 버스는 주로 트램이 운영되지 않는 외곽지역을 운행한다. 프라하 시내에는 지하철과 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돼 관광객이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시에는 메트로나 트램이 없기 때문에 도심이나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100번, 119번, 191번)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항에서 중앙역으로 가는 직행버스(AE버스)는 운행이 잠정 중단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행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버스 연결편을 공항 인포메이션 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버스도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하며, 버스 내 개찰기에 승차권을 넣어 사용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대부분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 시 호텔 프론트에서 일반 택시를 불러달라고 할 수 있다. 호텔 앞 대기 택시는 요금이 다소 비싼 편이다. 시내 중심가에 대기 중인 택시는 요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목적지를 기사에게 말하고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콜택시 업체로는 AAA(☎222 333 222), City Taxi(☎257 257 257), Moday Andel(☎737 222 333), Halo Taxi(☎2 4111 4111) 등이 있다. 해당 번호를 호출하면 안내원이 나오며 대부분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사용 가능하다.

프라하의 경우 우버, Bolt, Liftago 등 공유택시가 운영하고 있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유택시가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지하철,트램

1) 지하철

지하철은 프라하에만 존재하며, 프라하 지하철노선은 A선(초록색), B선(노란색), C선(빨간색) 총 3개의 노선이 있다. 환승역으로는 Mstek, Muzeum, Florenc가 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평일 출근 시간 기준으로 2~3분, 승객의 이용이 적은 저녁 시간에는 약 10분마다 배차돼 있다. 승차 및 하차 시, 출입문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지하철도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하며, 지하철 승강장을 내려가기 전 에스컬레이터 앞의 개찰기에 승차권을 넣어 사용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2) 트램

프라하의 경우 트램이 잘 발달돼 지하철 역 사이와 주요 중심지를 트램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트램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심야노선 트램은 자정부터 05시까지 20분~3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트램은 프라하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며, 트램탑승 후 승차권을 트램 내부에 있는 개찰기에 넣어 사용 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는 프라하 트램 내에 승차권 구매기가 설치돼 트램에서 바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찰이 필요없이 구입시점부터 사용 시간이 적용된다.

다. 통신

핸드폰

핸드폰의 경우 기존 스마트폰에서 유심칩만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며, 유심칩의 경우 공항이나 도심의 휴대폰 통신사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휴대폰 통신사로는 O2, T-Mobile, Vodafone이 있다. 또한, 충전식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고, 후불제인 경우 이동 통신사마다 약정 요금제 계약기간이 다르므로 통신사를 방문해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통신사별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O2: <https://www.o2.cz/osobni/en/mobile-tariffs>
- T-Mobile: www.t-mobile.cz/web/en
- Vodafone: <https://www.vodafone.cz/en/calling/tariffs/>

인터넷(와이파이)

체코 내 인터넷 사용은 일반화돼 있으며, 와이파이도 프라하의 경우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자택에 인터넷을 설치할 경우 서비스 업체(O2 또는 U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내역 확인용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되며, 3일 이내에 인터넷 설치기사가 연락해 신청 주소지에 이용 가능한 인터넷 속도를 알려주며 설치를 도와준다(O2 기준). 인터넷 설치 후 문제 발생 시 각 회사의 상담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각 인터넷 회사별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O2: www.o2.cz/osobni/en/internet
- UPC: www.upc.cz/internet

라. 관광명소

○ 프라하성(Prague Castle)

도시명	프라하
주소	119 08, Prague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 시즌(4. 1.~10.31.)<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하성 전체: 6:00~22:00- 역사 건물: 9:00~17:00○ 겨울 시즌(11. 1.~3. 1.)<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하 성 전체: 6:00~22:00- 역사 건물: 9:00~16: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명소소개	9세기 후반 현재의 프라하성 자리에 작은 성들이 건축됐으며, 1303년 화재로 작은 성들이 소실됐으나 1333년 카렐 4세(즉위 전)의 지시로 프라하 성이 축성됐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체코 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통령실이 프라하 성에 들어가게 됐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 224 372 423○ 홈페이지: https://www.hrad.cz/

○ 성비투스 대성당(St. Vitus Cathedr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III. nadvori 48/2, 119 01 Praha 1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 시즌 (4. 1.~10.31.) : 9:00~17:00 겨울 시즌 (11. 1.~ 3. 1.) : 9:00~16: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명소소개	10세기경부터 원형 건물이 있었으나, 1344년 카렐 4세 때 성당 건설이 시작됐다. 1873~1929년간 건설된 성당 서쪽 부분(신 고딕 양식)이 완성됨에 따라 현재의 모습(길이 124M, 최대폭 60M, 최고 높이 100M 정도 규모)으로 완공됐다. 성당 지하에는 카렐 4세를 비롯한 수 명의 체코 왕 무덤이 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 224 372 423 홈페이지: https://www.hrad.cz/

○ 카렐교(Charles bridge)

도시명	프라하
주소	Karluv most, 110 00 Praha 1
운영시간	상시 이용 가능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1342년의 대홍수로 현재의 다리 자리에 있던 목조 다리(935년 건설) 및 석조 다리(JUDITH 다리, 1170년 건설)가 모두 유실된 이후 1357년 카렐 4세의 명령에 의해 당시 27세인 독일 궁정건축가인 피터팔러(프라하성과 비투스 성당도 건축)에 의해 착공돼 1402년에 완성됐으며, 체코에서 피섹의 돌다리 다음으로 오래된 다리이다. 피터 팔러는 구시가지와 프라하 성을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방어적 역할 수행도 고려해 다리를 건설했다. 이곳은 30년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이다. 이 다리는 체코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렐4세의 이름을 따라, 1870년 카렐교로 명명됐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수리됐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 221 714 714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

○ 천문시계(Astronomical Clock)

도시명	프라하
주소	Staromestske nam. 1, 110 00 Stare Mesto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요일~일요일 9:00~22:00 월요일 11: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천문 시계의 바깥 원은 청색, 흑색, 그 사이사이에 갈색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 낮과 밤, 새벽, 저녁을 나타내며 천문 시계 안쪽 원은 태양, 달, 북극을 상징한다. 천문 시계 밑의 원형은 12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매일을 상징하는 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매시 정각 시계 옆 해골 인형이 움직이면서 종을 치면, 동시에 그 위 두 개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12제자 반신 목각인형이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20 236 002 629 ○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
----	-----------------------------------------------------------------------------------------------------------------------------------------------------------

○ 바츨라프 광장(Wenceslas Square)

도시명	프라하
주소	110 00 Prague
운영시간	상시 이용 가능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광장(廣場)의 동쪽 끝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에서 출발해 나 프리코페거리(서울의 명동과 같은 번화가)까지의 길이 750m, 폭 60m로 광장이라기보다는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대로에 가깝다. 이 광장은 20세기 초까지 마시장으로 사용됐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으로 바츨라프 가마상 밑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출범이 선포됐고, 1948년에는 공산당의 권력 장악으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됐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을 때 체코 국민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저항했으며, 1989년 민주화 혁명(벨벳 혁명)의 중심지가 되는 등 체코 근대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20 221 714 714 ○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

<자료원 : 프라하성 및 프라하시 웹사이트>

마. 식당

- 현지식당

○ 스타라 쿠젤나(Stara Kuzelna)

도시명	오스트라바
전화번호	+420-733-390-701
주소	Na Baranovci 347, 710 00, Ostrava-Slezska Ostrava
가격	체코 전통음식 1인 기준 9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11:00~22:00 ○ 토 12:00~22:00 ○ 일 12:00~20: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체코 퓨전 식당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음.

○ 우 베이보두(U Vejvodu)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219-999
주소	Jilska 4, 110 00 Praha 1

가격	체코 전통음식 1인 기준 9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목 10:00~03:00 ○ 금~토 10:00~04:00 ○ 일: 10:00~02: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프라하 시내에 위치한 체코 전통 식당

○ **콜코브나 첼니체(Restaurant Kolkovna (Celnice))**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212-240
주소	V Celnici 1031/4, 110 00 Nove Mesto
가격	가장 유명한 텡메뉴 기준 8.5달러
영업시간	매일 11:00~24: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텡과 고크 맥주의 조합이 유명한 체코 퓨전 식당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음.

○ **부드바르카 비어하우스(Budvarka Beerhouse Restaurant)**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960-820
주소	Wuchterlova 336/22, Praha 6
가격	1인 기준 9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토: 11:00~24:00 ○ 일: 11:0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체코 유명 맥주인 부드바르 맥주 전문점으로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음.

○ **우 플레꾸(U Fleku)**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934-019
주소	Kremencova 165/11, 110 00 Praha 1
가격	1인 기준 10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0:0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500년 된 체코 전통식당으로 흑맥주가 유명함.
----	----------------------------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한국식당

○ 한일관(Hanil)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715-867
주소	Slavikova 1581/24, Praha 3-Zizkov
가격	1인 기준 18달러 정도
영업시간	월~토: 11:30~23:00(브레이크 타임: 14:30~17:3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프라하에서 운영한 지 오래된 한식 및 일식 식당으로 한식보다는 일식 위주, 스시 메뉴가 다양함. 고급식당으로 가격대는 높은 편임

○ 비빔밥 코리아(Bibimbap Korea)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37-917-956
주소	Chlumova 612/1, Praha 3
가격	1인당 9달러 정도
영업시간	○ 월~금: 11:00~22:00 ○ 토: 12:00~22: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비빔밥, 김밥, 도시락 위주의 한식 메뉴

○ 마미(Mamy)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815-009
주소	Benediktska 1060/3, Praha 1
가격	1인당 8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30~22:00(브레이크 타임 16:00~17:3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메뉴가 다양하며 구시가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함. 저녁시간 및 주말의 경우 예약 권장

○ 토모(Tomo Restaurant)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233-695
주소	Manesova 35, 120 00 Praha 2
가격	1인당 10달러 정도
영업시간	월-토 : 10:00~23:00(브레이크 타임 15:00~17: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와 스시 위주의 일식 메뉴가 있음.

○ 유니쿠(Yuniku Charcoal BBQ)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77-667-083
주소	Slezska 3, Praha 2
가격	1인당 11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3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소고기, 돼지고기 등 구이 위주의 메뉴

○ 프라하 포차(POCHA)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27-908-107
주소	Oldrichova 506, 128 00 Praha 2-Nusle
가격	1인당 10달러~14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오전 11:30~23:00 (브레이크타임 오후 3:00~5:00)
휴무일	휴무일 별도 공지
소개	불고기, 제육볶음, 닭갈비, 순대국, 닭강정 등 한식 및 안주위주 메뉴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디플로맷 호텔(Vienna House Diplomat Prauge)

도시명	프라하
주소	Evropska 370/15, 160 41 Praha 6
전화번호	+420-296-559-111
홈페이지	https://www.viennahouse.com/index.php?id=950&L=0
숙박료	98~170달러 (스탠다드룸)
소개	대사관이 모여 있는 프라하 6지구의 데이비츠키(Dejvicka)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시내 및 공항 연결이 용이함.

○ 코린시아 호텔(Corinthia Tower Hotel)

도시명	프라하
주소	Kongresova 1655/1, 140 69 Praha 4-Nusle
전화번호	+420-261-191-111
홈페이지	https://www.corinthia.com/prague/
숙박료	107~120달러 (수페리어 쿼룸)
소개	프라하 전경을 볼 수 있는 비셰흐라드 근방의 언덕에 위치해 도시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지하철 비셰흐라드역 바로 옆에 위치해 시내 연결도 용이

○ 인터콘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Prague)

도시명	프라하
주소	Parizska 30, 110 00 Stare Mesto
전화번호	+420-296-631-118
홈페이지	https://www.intercontinental.com/
숙박료	130~150달러 (트윈룸)
소개	프라하 구시가지 Parizska 쇼핑 거리에 위치해 카렐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

<자료원 : 호텔 웹사이트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게스트하우스

○ 행복한 프라하(Happy Praha)

도시명	프라하
주소	Zitna 610/23, 110 00 Praha 1

전화번호	+420-776-625-332
숙박료	35달러(성수기 도미토리 기준)
소개	조식 및 간단한 석식 제공. 간단한 취사 가능

○ 와우 프라하(Wow Praha)

도시명	프라하
주소	Mezibranska7, PRAHA1 110-00
전화번호	+420-776-565-931
홈페이지	http://www.wow-praha.com/
숙박료	35달러(성수기 도미토리 기준)
소개	프라하 중앙역 5분 거리. 조식 제공

○ 엄지민박(Umji Praha)

도시명	프라하
주소	Londonska 424/77, Praha 2
전화번호	+420-773-205-252
홈페이지	http://umjipraha.com/
숙박료	35달러(성수기 도미토리 기준)
소개	공항, 중앙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위치. 조식 제공

<자료원 :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체코는 타 유럽에 비해 비교적 난민 유입이 많지 않고 서유럽 대비 테러 위협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치안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프라하를 포함한 관광도시에서는 소매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까를교, 구시가지 광장 등 주요 관광지과 관광객이 붐비는 식당, 백화점, 지하철, 기차, 정류장 및 역 등에서 귀중품을 소매치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차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올려두는 가방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의자 위나 아래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귀중품은 호텔의 금고(Safety Box)에 보관하고 그날 쓸 만큼의 돈만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에 시내 주요 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 시에도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외곽지역 외에도 프라하 중앙역 주변 공원에는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접근할 경우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전화번호 158)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차량 운전 시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와 같은 대도시 시내에는 트램이 운행되고 트램길과 혼용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전 시 신분증, 유효한 면허증, 차량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양 당사자 간 물적 피해가액이 10만 코루나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 후 가급적 사고차량 이동 없이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나, 고속도로나 혼잡한 도로의 경우 안전 삼각대를 후방에 두고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다. 양 당사자 간 물적 피해가액이 10만 코루나 이하인 경우는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를 마련해 보험사에 신고 가능하다. 단, 사고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영사조력이 필요할 경우 주체코대사관(근무시간 중 +420-234-090-411, 근무시간 외 +420-725-352-420) 또는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연락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 후 재외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한국 귀국 시 효력이 상실되는 임시여권)을 발급받는다. 여권발급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분실신고서, 여권 사진 2매, 한국행 e-ticket, 수수료 15달러 또는 이에 상당한 체코화가 필요하다. 주체코대사관 연락처 및 주체코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지 경찰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전화번호: +420-234-090-411 / 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420-725-352-420
- 주소: slavickova 5, Praha 6
- 이메일: czech@mofa.go.kr
- 찾아가는 길: 지하철 A선 Hradcanska역 하차 후 아래 약도에 해당하는 출구로 나와 철길을 따라 약 200m 도보. 기차 대기 신호등을 건너 뒤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약 200m 걸으면 오른쪽에 흰색 건물 앞 한국 대사관 태극기가 보임.

○ 분실신고 경찰서

- 전화번호: +420-974-851-750
- 주소: Jungmannovo namesti 771/9, Praha 1
- 이메일: p1mopmus@mvcz.cz
- 찾아가는 길: 지하철 A선 Mustek역 하차 후 쇼핑센터 NEWYORKER를 찾음. NEWYORKER를 등지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 골목길에 외국인경찰서 위치
- 참고사항: 신분증(여권 등)의 경우 분실 및 도난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타 소지품(핸드폰, 카메라 등)의 경우 분실이 아닌 도난신고만 가능함.

○ 여권 사진 촬영장소

- 경찰서 인근 Mustek 지하철 역내 즉석 사진기 이용
- 대사관 인근 Hradcanska 역 근처 사진스튜디오 이용, 소요시간 20분
- 대사관 내 즉석 사진기 이용 가능

3) 응급 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화재신고: 150

- 범죄신고: 경찰 158, 시 경찰: 156
- 응급환자: 155
- EU 응급 전화번호: 112 (EU 회원국에서 이용 가능한 공통 응급번호, 응급상황 시 경찰, 소방서 등 연결, 영어 가능)

4) 체코 코로나19 센터

- o COVID-19 핫라인: 1221
- 영어 가능
- 운영시간: 월-금 오전 8:00~19:00, 토·일 9:00~16:30

자료원: 주 체코대사관, 체코 보건부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집 구하기

체코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기 비자 취득, 외국인 거주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자동차 운행 등록 등이 불가능하고 이삿짐을 인수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여름이 서늘한 기후 영향으로 냉방 장치는 대부분 없으나 기타 난방, 가스, 전기, 수도, 전화 등 설비는 완비돼 있다. 가구를 포함한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전자제품 구비 여부가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 사용료 등은 매월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연간 단위로 재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ealestate.expats.cz, www.sreality.cz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적당한 집을 모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 보증금으로 보통 월 임대료의 1~2개월치를 예치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하는 경우 중개업소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니 1개월치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금 지불 시 계약 파기 규정을 잘 확인한 후 서명하고, 보증금을 주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만료 시 집을 비워주기 전에 집주인은 파손 또는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파손으로 인한 금액을 감한 다음 보증금을 돌려준다.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해외로 돌아가는 경우) 종종 이를 악용해 집주인이 파손에 대해 과대하게 수리비용을 측정하거나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집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거주 중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수리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는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문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는 체코어와 영어로 각각 준비한 후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체코의 집주인들은 외국인들이 현지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현지 법률인을 통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의 의견 조율을 함께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주택 가격 현황

체코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판매와 임대 가격은 도시, 지역, 크기, 상태에 따라 격차가 크다. 프라하의 경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허가 지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 공급급부족, 관광객 대상 단기임대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임대료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프라하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추세는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업체 Reality Mix에 따르면 2020년 11월 평균 매매가격은 60㎡ 기준으로 프라하는 약 608만 코루나(약 3억 300만 원), 브르노의 경우 약 474만 코루나(약 2억 3,600만 원), 오스트라바의 경우 약 195만 코루나(약 9,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 수요가 주춤하여 2020년 11월 평균 임대가격은 60㎡ 기준 프라하는 16,953코루나(약 84만 원)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코루나 정도 감소하였다. 동일 기준 브르노는 14,194코루나(약 70만 원), 오스트라바는 10,435코루나(약 52만 원)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하의 경우 10구역으로 나뉘어있는데 가장 중심지인 프라하 1지구와 프라하 2지구의 60㎡ 기준 월평균 임대가격이 각각 21,143코루나(약 106만 원), 19,667코루나(약 99만 원)로 가장 높고 프라하 4,9,10지구가 약 14,800~15,300코루나(약 74만 원~77만 원) 정도로 프라하에서는 낮은 편이다.

전화

최근에는 체코에도 휴대폰 보급의 일반화로 가정에서 일반전화 사용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이미 전화가 설치된 경우 명의 변경은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규 유선전화 신청 시에는 유선전화 공급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연락 후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진행이 완료되면(서명 후) 공급회사에서 설치하는 직원에 방문해 설치를 진행한다. 계약에서 설치까지 공급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서비스 취소는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 취소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유선전화 신청은 UPC와 O2를 통해 가능하며 O2의 경우, 체코 내 무제한 유선 전화요금은 월 349코루나로 요금 상세내용은 O2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rodej-o2.cz/o2-tarify-pevna>)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11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나,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주파수의 경우 한국은 6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나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식수

체코에서 수도물은 위생적으로 식수로 마셔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체코 사람들이 수도물을 바로 식수로 이용하기도 하나, 석회로 인해 경수 필터가 있는 소형 정수기(브리타 정수기 등)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체코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형 정수기는 가정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탄산수도 많이 마시는 편이며, 탄산수(Perlivá voda)와 탄산이 없는 생수(Neperlivá voda) 모두 마트 및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체코에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딜러를 통해 시판되고 있으며, 다른 외제차도 각 대리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코에서는 한국과 달리 수동기어 자동차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동기어 자동차의 경우 수동기어보다 고가이며, 주문 후 자동차를 전달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구입 계약 시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 판매자 이름이 등록 서류에 표시된 이름과 동일하거나 판매자가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 이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부가가치세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 계약 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판매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 등록 증명서(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svedčení o registraci vozidla (Technický průkaz))

체코 내 중고차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고차 딜러샵은 AutoJarov, AAA Auto 등이 있다. 중고차의 경우 신차구입에 비해 기술점검증명서(녹색 원본, Technical Certificat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시차(Demo Car)의 경우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주요 자동차 보험회사는 UNIQA (www.uniqa.cz) 또는 Allianz (www.allianz.cz)가 있으며, 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보험 서류를 지참해야 자동차 인수가 가능하다.

차량가격

체코의 경우 한국과 달리 세단보다는 중 소형 해치백 모델이 대중적이며, 스코다,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의 중형 차량이 대중적으로 체코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체코에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가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최소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판매처별, 옵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스코다 Octavia Active : 450,900코루나부터
- 스코다 Fabia Active: 279,900코루나부터
- 폭스바겐 New Golf : 508,900코루나부터
- 현대 New i30 Family : 379,990코루나부터
- 아우디 A3 sportback : 652,900코루나부터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체코 비자 보유자, 장기 비자(1년 이상) 보유자, 영구 거주 허가증 보유자는 거주 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에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할 수 있다. 체코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통상 20일이 소요되나, 급행료 500체코 코루나를 납부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 한-체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
 - 2006.7.1. 발효된 체코 도로교통법(05.10. 개정)에 의거, 외국인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체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 비 EU 국가 국적자로서 90일 이상 체류 사증 보유자
 - 장기거주(1년 이상) 허가증 보유자
 - 영구거주 허가증 보유자
-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체코 내 206여 개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존재하며, 이전에는 신청자가 자신의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거주지역 이외의 기관에서도 체코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 프라하 지역: Business Centre Vysehrad, Na Pankraci 1685/17, 140 00 Praha 4 (전화: +420-236-005-490)
 - 오스트라바 지역: Ulice 30. dubna 635/35, Ostrava-Moravska Ostrava, 702 00 (전화: +420-844-121-314)
 - 프리덱 미스텍 지역: Palackeho 115, 738 22 Frydek-Mistek (전화: +420-558-609-166)
- 교환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신청서(체코어 서식)
 - 한국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운전면허증 체코어 번역본
 - * 한국운전면허증의 체코어 번역문은 주체코 대사관에서 발급
 - 운전자 건강진단서 1부
 - 여권
 - 90일 이상 체류 비자 또는 장기거주 허가증 또는 영구거주 허가증
 - 컬러 사진(35mmX45mm) 1매
 - 수수료: 200kc
- 교환발급 과정: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 확인 후, 발급기관은 한국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신청자에게 되돌려주며, 신청서 수령증을 발급한다. 수령증에 체코운전면허증 발급일이 표시된다. 교환·발급까지는 통상 20일이 소요되나, 급행료 200코루나를 지불할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

급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체코운전면허증 수령 시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운전면허증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운전면허증을 반환받기로 결정할 경우, 동 운전면허증은 체코 교통부를 거쳐 대사관에 전달되며,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수령한다. 운전면허증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발급기관에서 보관하게 된다.

- 한-체코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체제
 - (한국) 1종 대형 : (체코) B,C,D
 - (한국) 1종 보통 : (체코) B, C1, D1
 - (한국) 1종 기타 : (체코) B, B+E, C, C+E
 - (한국) 2종 : B

-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설명
 - AM: 50ccm까지의 오토바이, 15세 이상
 - A1: 125ccm까지의 오토바이, 16세 이상
 - A2: 25kW ~ 35KW까지의 오토바이, 18세 이상
 - A: 35kW 이상의 오토바이, 24세 이상
 - B: 3~3.5톤 승용차(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C: 3.5톤 이상 로리(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D: 8석 이상의 버스
 - C1: 3.5~7.5톤의 로리
 - D1: 8~16석의 소형버스
 - B+E: 3~3.5톤 승용차(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 C+E: 3.5톤 이상 로리(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상업은행(Komerčni banka): 소매, 기업 및 투자 등 보편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 체코 내에 399개의 지점과 160만 이상의 고객 보유
- 체코저축은행(Ceska sporitelna): 오스트리아 Erste 그룹의 일부로, 최다 고객(47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은행
- 체코슬로바키아 상업은행(CSOB): Komerčni Banka와 마찬가지로 체코에서 가장 큰 상업 은행 중 하나. 280개의 은행 지점과 3,300개의 Postovní sporitelna 라는 우체국 저축은행을 운영

계좌 개설방법

은행계좌는 주소지만 체코에 있으면 장·단기 체류자 모두 가능하며, 유로화나 달러 계좌와 체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체코는 외화 거래가 자유로워 외화 표시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하며, 송금 등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 단, 은행거래 유지 및 해외 송금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은행마다 차이가 크므로, 꼼꼼히 알아본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은행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은 필수다. 체코는 은행계좌 개설 시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주지 않으며, 한국식 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 2주가량 경과한 후 안내문과 함께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 계좌개설 구비서류(상업은행 기준)
 - 신분증(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기타 신분증) 2개
 - 비자 및 여권에 찍힌 거주지 신고 스탬프
 - 체류목적 증명서(노동허가서, 입학허가서 등)

2020년 현재, 개인계좌의 경우 체코 KB(Komerční Banka) 은행 내 코리안데스크가 있어 영어가 어렵거나, 한국어로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은 분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법인계좌의 경우 KB뿐만 아니라 Citi Bank 역시 코리안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체코 유일 미국국제학교로 외국인에게 선호도가 높아 입학이 어려운 상황 o 1948년 설립되어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과 the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회원으로 등록 o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최초 입학금: 약 1,100달러 o 만 3~4세: 연간 약 11,400달러 o 만 15~16세: 연간 약 26,000달러 o 연간 12,900달러 o 만 4~5세: 연간 12,700달러 o 연간 14,200달러 o 유치원(만 5세 이상)~5학년: 연간 18,600달러
홈페이지	https://www.isp.cz/
비고	미국계 학교

o The Prague British School(PBS)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the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ECIS) 및 the Council of British Independent Schools in the European Communities (COBISec)의 회원으로 등록 o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corns Day Care(만 20개월~3세) : 연간 약 7,000~13,500달러 o day Care Nursery(만 3~4세) : 연간 약 8,000~13,500달러 o Reception(만 4~5세) : 연간 약 16,750달러 o Year 1~2 : 연간 약 16,750달러 o Year 3~6 : 연간 약 17,250달러 o Year 7~9 : 연간 약 18,750달러 o Year 10~12 : 연간 약 19,000달러
홈페이지	http://www.pbschool.cz/
비고	영국계 학교

o Riverside School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식 미션 스쿨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4세 : 연간 약 9,100달러 ○ 만 4~7세 : 연간 약 12,300달러 ○ 만 7~11세 : 연간 약 14,500달러 ○ 만 11~18세 : 연간 약 14,700달러 ○ 입학금 약 400달러 별도, ESL 별도(약 1,540달러)
홈페이지	http://www.riversideschool.cz
비고	영국계 학교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현지학교

○ Lodynska Zakladni Skola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p>초등학교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어진다. 저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말하며 고학년은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의미한다. 저학년 때는 체코어, 자연, 산수, 외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이 주 과목이다. 고학년의 주 과목들은 체코어와 문학, 역사, 사회, 도덕, 지리, 산수, 자연, 물리, 화학,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몇몇 선택과목이 있다. (예: 학교 합창단, 컴퓨터 등등)</p> <p>체코 초등학교에는 고학년부터 과목마다 선생님이 따로 있다.</p>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londynska.cz/

○ Gymnazium Duhovka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체코의 졸업 시험 Maturita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체결한 8개 국어 8개년 프로그램을 제공
학비	학교에 문의 가능
홈페이지	https://www.duhovkagymnazium.cz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마. 병원

○ University hospital Brno

도시명	브르노
주소	Jihlavská 20, Brno

전화번호	+420-532-23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 University hospital Ostrava

도시명	오스트라바
주소	17. listopadu 1790, Ostrava-Poruba
전화번호	+420-597-37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 Na Homolce Hospit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Roentgenova 2, Praha 5
전화번호	+420-257-27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 Motol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V valu 84, 150 06 Praha 5
전화번호	+420-224-431-111
진료과목	대학병원
비고	유선 연락시 영어 소통 가능한 사람과의 직접적 연결이 어려우나, 직접 방문시 0층 Reception에 영어 소통 가능한 직원이 있음. Reception의 안내에 따라 1층에 Foreign Department로 가서 보험, 진료과목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주차료는 출구에서 이용가능하며, 현금으로만 계산 가능. 응급실 24시 이용가능

◦ Military University Hospital Prague

도시명	프라하
주소	U Vojenské nemocnice 1200, 169 02 Praha 6
전화번호	+420-973-208-333
진료과목	국군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응급실 24시 이용가능. Motol 병원과 함께 프라하 내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임.
----	-------------------------------------------------------------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메트로폴 즐리친(Metropole Zlicin)

도시명	프라하
주소	Revnicka 1, 155 21 Praha-Zlicin
홈페이지	http://www.metropole.cz
비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종합 쇼핑몰. 가구 백화점 이케아도 이 곳에 위치하고 있음

○ 센트룸 호도브 (Centrum Chodov)

도시명	프라하
주소	Roztylska 2321/19, 148 00 Praha 11
홈페이지	https://www.centrumchodov.cz/
비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종합 쇼핑몰. 영화관과 큰 푸드 코트가 있음

○ 팔라디움 (Palladium)

도시명	프라하
주소	nam. Republiky 1078/1, 110 00 Nove Mesto
홈페이지	http://www.palladiumpraha.cz
비고	프라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종합 쇼핑몰. 편리한 교통과 위치로 항상 이용객이 많음

<자료원 : 각 쇼핑센터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 테스코 에덴 (Tesco Extra Eden)

도시명	프라하
주소	U Slavie 1527/3, 100 00 Praha 10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에덴 쇼핑몰에 위치한 대형 테스코 매장

○ 알버트 안델 (Albert Zlaty Andel)

도시명	프라하
주소	Plzenska 344/1, 150 00 Praha 5-Andel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지하철 B선 안델(Andel)역 근방의 대형 알버트 매장

○ 사파 (Safa)

도시명	프라하
주소	Vysehradska 1349/2
취급 식료품	아시아 푸드 및 각종 식료품
비고	체코의 베트남 타운으로 주로 베트남 식품을 판매한다. 한국 식료품도 구매할 수 있다.

○ 마크로(Makro)

도시명	프라하
주소	Jeremiova 1249/7, 150 00 Praha 5
취급 식료품	식료품 및 와인 등 전 품목
비고	회원제 창고형 매장으로 기업회원으로 가입시 이용가능. 고기 종류가 다양하며 대량구매시 값싸게 이용 가능.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Albatross Golf Resort

도시명	비소키 우에즈드(Vysoky Ujezd)
주소	Sokolska 162, 267 16, Vysoky Ujezd
홈페이지	https://albatross.cz/en/
소개	국제 공항 부근 프라하 외곽에 위치한 골프 리조트. 18홀 골프 코스를 갖추고 있음

○ 폼 팩토리(Form Factory)

도시명	프라하
주소	OC PALLADIUM Namesti Republiky 1079/1a 110 00 Praha 1 (nakupni centrum Palladium - 2, patro)
홈페이지	https://www.formfactory.cz/
소개	체코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센터

○ 뵤돌리 수영장(Podoli Swimming Pool)

도시명	프라하
주소	Podolska 74, Praha 4
홈페이지	https://pspodoli.cz/
소개	비세흐라드 부근 블타바 강가에 위치.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이 있는 스포츠 및 레저 센터

<자료원 : 각 편의시설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New Year's day)	2021-01-01	
성 금요일(Good Friday)	2021-04-02	
부활절(Easter Monday)	2021-04-05	
노동절(Labor day)	2021-05-01	
2차 대전 종전 기념일(Liberation Day)	2021-05-08	
기독교 선교 기념일(Cyril &Methodius Day)	2021-07-05	
얀 후스 순교 기념일(Jan Huss Day)	2021-07-06	
체코 건국 기념일(Czech National Day)	2021-09-28	
독립 기념일(Independent Day)	2021-10-28	
자유화 운동(Velvet 혁명) 기념일	2021-11-17	
크리스마스 연휴	2021-12-24	
크리스마스 연휴	2021-12-25	
크리스마스 연휴	2021-12-26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체 조사>

9. KOTRA 무역관 안내

프라하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kretova 12,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 전화번호: +420-245-005-650
- 이메일: kotra@kotra.cz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prague>
- 참고사항: 무역관에 카탈로그 송부 시 체코 통관절차에 유의하여 송부 필요

공항-무역관 이동

1) 프라하(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공항에서 택시 이용 시

택시 승강장에 주차된 택시를 타게 될 경우 약 600코루나(약 24유로) 정도 발생한다.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는 카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체코 코루나 또는 유로를 준비해야 한다. 프라하는 우버, Bolt 등 공유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버를 이용할 경우 약 300~400 코루나 정도 소요된다. 이동 소요시간은 약 30분 내외이다.

2)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

프라하공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종점인 지하철역 Nadrazi Veleslavin(A선)에서 하차 후 지하철로 갈아타고 Muzeum(A선)역에서 하차한다. 무역관은 A선(초록색)과 C선(빨간색)의 환승역인 Museum 역으로부터 1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뒤 도로 건너편 Panarama Business Center 건물 1층에 위치)

3) 대중교통 티켓 구매 방법

프라하 대중교통 티켓으로 버스/트램/메트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티켓 종류는 30분, 90분, 24시간, 72시간 총 4가지이다. 프라하공항 내 티켓판매 기계는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하며 현금은 체코 코루나만 가능하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0분 티켓(32 코루나) 을 구매해야 한다. 버스 탑승 시 구매한 티켓을 버스 내 노란색 펀칭기에 펀칭해야 하며, 펀칭시간 기준으로 티켓 종류에 따라 탑승 시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90분 티켓의 경우 펀칭 시간부터 90분간 유효하며 버스, 트램, 메트로를 90분 내 자유롭게 환승이 가능하다. 다만 펀칭은 첫 대중교통 탑승 시에만 해야하며, 검표원이 불시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펀칭된 대중교통 티켓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펀칭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번 되어 있을 경우 검표원 검사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PID Litacka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프라하 대중교통 연결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선택된 여정의 티켓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